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6. 4.

대 한 민 국 정 부

목 차

1. 고용노동부 본부 ····· 1
2. 중앙노동위원회 ····· 197
3. 최저임금위원회 ····· 213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217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21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225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231
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241
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247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251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257
12. 근로복지공단 ····· 263
13. 한국산업인력공단 ····· 279
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87
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97
16. 한국고용정보원 ····· 303
17.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307
18. 건설근로자공제회 ····· 313
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317
20. 한국잡월드 ····· 321
2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325
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329

고용노동부 본부

【조직 · 인사 · 재무 등 일반사항】

(1) 중대재해 수사조직의 주요 지청단위 확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 수사 관련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38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기소까지 평균 1년 반이 소요되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중대재해 사건은 1322일 동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어 수사 조직과 역량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므로 현재 광역청에 있는 중대재해 수사조직을 주요 지청단위로 확대할 것	○ 중대재해 사건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중대재해 수사 인력 · 조직을 기존 234명, 13과 2팀에서 529명, 34과 1팀으로 확대하였음('26.2월)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양재경 연락처 044-202-8961

(2) 공무직 차별금지 및 처우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직에 대하여 같은 일을 하는데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등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없도록 할 것	○ (고용노동부)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민원업무수당(5만원), 정액급식비(16만원), 명절상여금(기본급의 120%)을 지급하고 있음 - 향후에도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 요구 등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5급 임승묵 연락처 044-202-7897 ○ 산하기관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무직 차별금지 및 처우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음 * 산하기관 업무보고('26.1.12), 산하공공기관장 회의('26.4.9.)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 적극 협조 당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5급 백승엽 연락처 044-202-7057

(3) 근로감독 업무 기능 총괄 본부 조직 신설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근로감독관 증원과 함께 근로감독 업무 기능을 총괄하는 본부 조직 신설을 검토할 것	○ 체계적이고 효과성 높은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국장급 전담기구로 '근로감독정책단' 신설('25.10.1) - 근로감독기획과 이관(기존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협력과 신설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신유진 연락처 044-202-7971

(4)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의 상고 취하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국가가 이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였는데, 상고 취하를 검토할 것	○ 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가 책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상고하였음 * 상고 취지 의원실 설명 ○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유가족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사과 서한문 발송 ○ 아울러,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 사업주가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26년 신설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불법·노후숙소 개선 지원을 강화 * 열악한 숙소 개선 시 사업주에게 개보수비 지원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노대윤 연락처 044-202-7739

(5) 고용노동부 산하 R&D 전담기관 설립방안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장의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기술 개발, 산업별 맞춤형 보호장비 표준화 등 R&D 과제를 고용노동부가 주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 기술·기준 및 인증을 통합 관리할 부처 내 R&D 전담기관 설립방안 및 산업안전 R&D 구축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 산업안전 R&D 관련 사업계획 및 전문조직 설립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 완료('25.10.28) - 연구용역을 통해 타부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조직 개편(안) 마련 예정('26년~)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김건우 연락처 044-202-8815

(6) 근로감독관 증원 예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 업무 수행 기반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 주무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	○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국안전보건공단 기구·인력 확충 - 수시직제, 정기직제 등을 통해 공단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강귀태 연락처 044-202-8816

(7) 공공기관의 낮은 임금 수준 문제를 개선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산하 공공기관별 임금 수준 현황을 파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공공기관은 임금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5급 백승엽 연락처 044-202-7057

(8) 공공기관 인력 충원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맞는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현재 산하기관 인력 충원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산하 공공기관 수시 증원 협의 중임(3월~5월) 국정과제 수행 등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음 ○ 아울러, 인력 재배치·업무효율화·적시 인력 충원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5급 백승엽 연락처 044-202-7057

(9)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위법행위 감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의 위법행위 관련, 부당 집행된 국고 예산을 환수하고, 징계 양형의 불균형과 행정 처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감사를 실시할 것	○ 한국폴리텍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5.3.17. 한국폴리텍에 관련 감사결과 통보 완료 - 前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장 박○○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13,410천원) 회수 조치 -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 담당자 2명 "주의" 조치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5급 김영남 연락처 044-202-727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5급 전종포 연락처 044-202-7804

(10) 고용정보원장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비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정보원장 공모 과정에서 지원서 양식 임의 변경(연구·과제 수행 실적 허위 기재) 및 고용정책·노동시장 전문성에 대한 사실과 다른 추천 사유가 제출된 의혹 등이 제기된바, 고용노동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 '25.10.21.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중지적 후, 즉시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 - 기관장으로서 고용전문성 이외에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청렴성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임명 - 지원서 양식 중 징계 등 본인에게 해당없는 항목은 삭제하고 수행업적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 양식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의 항목 중 "과제명", "연구기간" 대신 "수행기관" 및 "수행기간" 작성 - 다만 해당 사안은 모집 공고문상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임용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문에 지원서 양식 임의변경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26.3.17. 한국고용정보원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담당자 5급 이현주 연락처 044-202-7683

(11) 지청 지휘체계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지청의 대응지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서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대응 지연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지청 지휘체계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향후 조치 및 대응 지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26.6~7월 중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 등을 파악 후 노사관계 지도에 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 -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제도 개선 등 조치할 계획 ○ 향후 관할 지방관서의 폭력사태 대응 지연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 폭력사태 발생 시 즉시 본부에 상황보고 및 당일 현장지도 원칙을 수립·시달하고, - 본부-지방관서 노사관계 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청 지휘체계 및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노사관계지원과 담당자 5급 송형기 4급 오지영 연락처 044-202-7806 044-202-7621

(12)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통합적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각 지방고용노동청마다 부정수급 적발 성과에 큰 편차가 있으므로, 각 지방청마다 통일적으로 부정수급 방지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증가율 등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등 차이가 나는바 구조 및 조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부정수급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각 지방관서마다 통일적인 부정수급 방지 업무처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관서 시달('26.3월) ○ 육아휴직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족사업장 및 폐업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음 * 사업장 정기점검('26.4~10월), 특별점검('26.9~10월), 수시점검(연중) 실시 예정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5급 박재성 연락처 044-202-7405 ○ 전국 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사례 분석하고 예방조치 논의·점검 지속 추진 * 장관, 본부장 등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25.9.8., 9.30., 12.15, '26.3.16) →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 ○ 지역별 특성(산업·인력 구조, 중대재해 발생현황 등)에 맞는 예방사업 체계적 추진 *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등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오상민 연락처 044-202-8805

(13) 노동위원회의 적정 조사관 인원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위원회의 현재 사건 접수 건수 수준 및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 시행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적정 조사관 수 반영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였음 * '25.12.30. 조사관 50명 증원 ○ 또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와 업무 증가에 대비하여 조직진단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노조법 개정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및 조직 재정비 방안(고려대 산학협력단, '26.3.31.~)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5급 김달호, 5급 정누리 연락처 044-202-8367, 044-202-7056

(1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들이 임원에 취임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 및 시정 조치할 것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5년에 1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 '26년도 비영리법인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요청 공문 시행('26.2.27) - 법인이 비위사실, 민원발생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조속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5년 국정감사 언급사항을 중심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 기술협회 사무 감독 실시('26.3월말) * 대한산업보건협회 감독 예정(`26년 중)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5급 조일한, 4급 윤현욱 연락처 044-202-8852, 8873

(16) 중앙노동위원장의 무분별한 출장 및 강의료 수령과 관련한 특정감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연간 수백건이 넘는 출장을 실시하고 본인이 도입한 ADR관련 사업에서 직접 강의를 하여 연간 수백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점은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할 것	○ 중앙노동위원회 ADR사업 관련 특정감사 실시 완료('25.11.5~12.17.) - 위원장이 직접 강의 후 강의료를 받은 부분은「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 확인되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 공무국외출장 시 예산규정을 위반하여 과다 집행된 예산 환수 조치 - ADR 사업 추진 관련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시정조치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5급 오현석 연락처 044-202-7802

(17) 한국폴리텍 업무수행 관련 감사 및 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발전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 직속으로 두고, 이사장이 발전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추진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한국폴리텍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5.3.17. 한국폴리텍에 관련 감사결과 통보 완료 - 직업교육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사전 준비 미흡 및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게 "부서 경고" 및 "주의" 등 조치 - 연구용역과제 관리 철저 및 연구관리·운영체계 개선 요구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5급 김영남 연락처 044-202-727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5급 전종포 연락처 044-202-7804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캄보디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선제적으로 분교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 한국폴리텍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5.3.17. 한국폴리텍에 관련 감사결과 통보 완료 - 캄보디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부실이 확인되어 “기관 경고”,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 각 “경고” 조치 - 중요사업 추진 시 이사회 심의 절차 준수 등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요구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5급 김영남 연락처 044-202-727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5급 전종포 연락처 044-202-7804

(18)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국폴리텍 대학 급식비 지원단가가 일인당 2,400원으로 지원수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대학의 급식비 등 제반 예산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 폴리텍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26년 폴리텍 급식비 지원단가를 2,34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하였음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5급 김영남 연락처 044-202-7274

(19)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연가 사용률이 낮고, 질병 휴직률이 높으며 자발적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국민연금공단으로의 이직 건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하는 노동정책 주관 부서로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	○ 업무강도 높은 민원 부처로써, 지속적 조직만족도 제고 및 사기진작 노력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 - ① 불필요한 일 줄이기로 시작하여, ② 증원된 근로감독관 인력을 기관·부서별 균형있는 배치, 업무효율화로 업무 부담 경감 및 연가 사용 촉진, 신규채용과 승진 인원 간 균형있는 규모 산정, ③ 특이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제도 운영, ④ 노동행정에 인공지능 도입 등 우리부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직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부서별 근로 환경 개선 노력 예시> ①증원: '25년 1천명, '26년 1천명 ②안해도되는 일찾기 추진('26.1.14~28) ③법률 상담, 소송 대리 ④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다우리GPT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5급 정재훈 연락처 044-202-7864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직원 처우개선 확대 - (공단 임금수준) ’24년 공단 정규직 평균 연봉(64,992천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88개 중 75위(평균 78,513천원, 83%수준), 사회보험기관 중 최하위 * 의사직 제외시 59,765천원으로 전체 기관 중 81위 *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최근 5년 내 전체 신규입사자 중 22%*가 퇴사 * 신규입사자’20년~’25년 총 1,300명 중 292명 퇴사 - (처리결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통해 내부평가급 정상화 예산 ’26년 11.4억원 인건비 증액 * 단계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예산 증액 요청 - (향후계획) 공단은 기금에서 운영비를 전액 출연 받아 정부지원이 절실하므로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 및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 지속 요청 * 정부 관련부처 예산증액 당위성 설명 등 협의 지속 ○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감정상태 진단 및 해소 지원프로그램(EAP) 확대 운영 - 소속기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파견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 도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소속기관별 찾아가는 건강특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기관 내 직원 유대감 증진 ○ 특이민원으로부터의 보호제도 운영 - (전담팀 운영) 공공기관 최초 특이민원 전담팀 지속 운영 - (지원프로그램) 법률지원, 심리상담(EAP) 및 직원보호휴가 부여 등 - (직원보호시설·장비) 연차별 소속기관 직원보호시설 확충 및 휴대용 영상녹화기기 배포 * ’26년 예산 605백만원 확보 - (시설방호원) 미배치 소속기관 인력 및 예산 반영 추진 담당부서 노사협력부, 고객지원부 담당자 김성실 부장, 윤상희 부장 연락처 052-704-7061, 7591

(20) 고용평등상담실 관련 예산 증액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 정부에서 폐지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예산이 9개소분만 편성된바,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이 원상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을 위하여 노력할 것	○ '27년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 협의를 진행 중이며,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과 노동부 고용평등상담관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노력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5급 정희성 연락처 044-202-7546

【고용 부문】

(1) 내일배움카드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내일배움카드 훈련의 수도권 편중, 온라인 과정의 자막 미지원 등으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제한을 고려하여 제도개선할 것	○ '26년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국기훈련 등 특화훈련 참여시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지역별 우대 적용 ※ 월 최대 지급액: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인구감소지역) 50만원 - '27년 하반기 선정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C, 온라인) 훈련과정에 자막을 지원토록 추진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5급 윤주희 연락처 044-202-7318

(2) 내일배움카드의 교육과정의 최신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내일배움카드(KDC 훈련)의 전체 교육 77%가 정보 기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 분야의 82%가 최소 20개월 이전에 제작된 과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최신 교육과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KDC 훈련 콘텐츠를 전수 조사하여 시의성이 부족한 과정을 확인하고 훈련기관에 통보하였음 - 향후 훈련과정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콘텐츠의 스크립트 등을 확인하여 훈련 내용 최신화 여부를 확인할 계획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5급 김용욱 연락처 044-202-7311

(3) 국내 고용 생태계 회복 위한 고용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고용 부분 전략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초노동질서가 갖춰진 청년·중장년층 고용 확대, 지역 고용 시장 활성화 등 국내 고용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고용 대책을 수립할 것	○ 고용노동부는 국내 고용 생태계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고용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발표하고,('25.12.26) -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음('26.3.5) ○ 또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25.12.18)하고, ○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울산 남구·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여수시·광주 광산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으며('26.1.5~1.7, 2.12) - 지역 주도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고용서비스를 위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26.2.20)하여 지역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 ○ 우리부는 향후에도 고용창출력 강화와 취약부문 고용 개선을 위한 고용 대책을 지속 수립해나가겠음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4급 김철수 연락처 044-202-7212

(4) 고용허가제 쿼터와 발급실적간 차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고용허가제 쿼터와 실제 발급 실적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허가제 시스템상 현장 실태와 맞지 않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E-9 신청·발급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실시하고, 한국 문화·언어에 익숙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맞춤형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	○ E-9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 지방정부·사업주 등의 현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중 - 향후 쿼터와 발급실적 간 차이가 크지 않도록 수급설계를 체계화하여 적정 수준의 쿼터를 산정하는 한편, - 사업주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용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해나가겠음 ○ 한국어·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 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25.12~'26.2월)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음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최주현 연락처 044-202-7145

(5)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 관련 전반적인 정책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 보증보험 한도를 올리고,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불 청산 전까지 체류가 보장되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관련 정책 전반을 개선할 것	○ 외국인노동자의 임금 체불 보증보험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보장 제도와 더불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병행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여부에 따라 최대 보장 한도가 달라지므로 사업장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 - 이와 관련해 노사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검토 중 ○ 주거환경 개선 관련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불법가설건축물 제공금지, 지방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 입법 진행중(국회 법사위 계류) -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열악한 숙소 개선 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설('26)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김진아, 5급 노대윤 연락처 044-202-7152, 7739

(6) 지자체와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사항 협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역과 관련된 외국인 노동정책에 있어 고용노동부·법무부·지자체의 협의에 기반한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자체에 외국인 노동정책과 관련된 쿼터·비자 등 체류자격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2년부터 고용허가제 관련 지역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 협의회를 정례화(연 2회)하여 운영 - 협의회를 통해 지역별 외국인력 도입 수요, E-9 운영과 관련한 현장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 ○ 향후 중앙-지방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지자체와 외국인 노동정책과 관련된 쿼터·비자 등을 협의해나가겠음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최주현 연락처 044-202-7145

(7)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주노동자 인력이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바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용부담금은 이주노동자 관련 편익의 지역 환류 및 과도한 외국인력 사용 방지라는 측면이 있으나, - 주로 영세·중소기업에서 E-9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 경기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도 존재 ○ 향후 사회적 공감대, 도입 시 파급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현장 노사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최주현 연락처 044-202-7145

(8)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활성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커뮤니티 형성, 주말 상담 운영, 지원의 익명성 유지 등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은 민간에서 실시했을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등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원한 사업을 재개하는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외국인노동자 정착 지원을 위해 '26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25년 9개 → '26년 19개소)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예산 협력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업 수행기관(민간 비영리 단체)이 참여, 그들만의 축척된 전문성, 커뮤니티 형성 기능,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국비-지방비 50:50 매칭, 거점형 13개소 4억원(국비 2억원), 소지역형 6개소 1억원(국비 0.5억원) 지원 - 향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강정안 연락처 044-202-7158

(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그간 진행해 온 기초연구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 산업전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 사전평가('25.12월) 등 기초연구 실시 - 작년부터 1기 전문가 포럼을 통해 산업전환 현황 및 일자리 전망 분석, 핵심과제 논의 등을 실시 ('25.11~'26.3월, 8회) ○ 경제부총리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26.3.11)에 '산업전환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 2기 전문가 포럼 운영(4~6월)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노사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음(6월) 담당부서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담당자 4급 박득영 연락처 044-202-7412

(10) 석탄발전산산업종사자를 고려한 행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탄발전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석탄발전산업 종사자의 생활, 가정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논의시 노동자들의 삶을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활동 등에 참석하여 석탄발전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 논의 * 총리실 주관 발전산업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검토를 산업통상부와 함께 추진 중 * 특별지구 지정 위한 연구용역 수행('25), 특별지구 지정 기준 등 고시 제정('26.上) 및 특별지구 제도 시행 예정('26.下~) ○ 향후에도 석탄발전산업 정책 관련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및 지원 등을 산업통상부와 함께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담당자 4급 박득영 연락처 044-202-7412

(11)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바, 수급자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질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25.3월부터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재취업활동 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또한, 전체 반복수급자 중 60세 이상 반복수급자의 비중('25년 기준 36.5%)이 가장 높음을 고려하여, - '26.3월부터는 6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수급자들이 구직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조기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강화가 필요한 대상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5급 박채원 연락처 044-202-7909
○ 모성보호 정책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이전 등 실업급여 계정 관련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노·사·정이 참여하는「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임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5급 박미진 연락처 044-202-7351

(12)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 전공 제한 철폐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학 전공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기에 설계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전면 재설계하고 학력·전공 중심에서 경력과 훈련,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비전공자 등 더 많은 분들이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위원실에 보고드렸으며('25. 11. 4.), - 국가자격포럼을 개최, 전문가 논의·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26.4.3.) ○ 향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사·기능장 등급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정책연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응시자격을 유연화·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5급 김준영 연락처 044-202-7288

(13) 한미투자협정으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미투자협정으로 미국에 대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바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 영향에 대해 점검할 것	○ 고용노동부는 미 통상정책이 국내 경제·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25.12.22)를 개최하였음 - 관세협상 타결의 노동시장 영향(노동연), 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KDI) 등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미 통상정책 및 해외투자의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점검 ○ 최근에는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우리부는 향후에도 산업·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및 점검하겠음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4급 김철수 연락처 044-202-7212

(14)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 관료들이 임원에 취임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감독기관으로서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할 것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5년에 1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 '26년도 비영리법인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요청 공문 시행('26.2.27) - 법인이 비위사실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조속히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5년 국정감사 언급사항을 중심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 기술협회 사무 감독 실시('26.3월말) - 대한산업보건협회 감독 예정('26년 중)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5급 김수명 5급 김재규 5급 박성일 4급 윤현욱 연락처 044-202-7068 044-202-8851 044-202-8861 044-202-8873

(15) 고용보험 상실신고 허위 작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노동자들도 상실코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허위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음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 시 노동자가 상실사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SMS, 국민비서, 우편)에 조치하기 위해 공단과 협의 중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5급 박채원 연락처 044-202-7909

(16) 해외 취업 사기성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해외 고수익 미끼 구인광고로 인한 청년 납치·감금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이 고용24 연계 광고에 한정되어 있고 고용주가 연계를 거부할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사전 필터링으로 차단된 광고에 대해서도 사후 시정·관리 여부가 불분명한바, 고용노동부는 고용24 비연계 광고 및 사전 차단 광고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모니터링·시정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구인광고 모니터링팀 운영, 거짓의심 구인광고 데이터 연계 및 검색서비스 구축,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사회초년생 대상 거짓구인광고 교육·홍보 등 (한국직업정보협회 위탁) ○ 민간 연계 구인광고 피드백 시스템 구축 - 거짓 구인광고 단속 AI 점검시스템* 구축, 고용24 연계된 민간 포털 구인광고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개발** ○ 직업안정법 개정 완료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부과 - 노동부장관에 거짓 구인광고 수정, 게시 중시, 삭제 명령 근거 마련 -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게재 의무 신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규정 적용 - 사업자협회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5급 박찬영 연락처 044-202-7393

【노동 부분】

(1) 노조 내부 정보 등의 대북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 노조 내부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	○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과의 소통 시 취득하게 되는 정보는 주로 정부 정책 관련 노동조합의 의견으로, - 노조 내부 정보는 사실상 파악 곤란 ○ 향후 노조와의 소통 과정에서 노조 내부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 북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담당부서 노사관계지원과 담당자 4급 오지영 연락처 044-202-7621

(2) 개정 노조법에 대한 보완 입법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개정 노조법의 시행 단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하여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등 보완 입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개정 노조법과 관련하여 해석지침을 통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판단기준 등을 마련('26.2월 확정)하였으며, -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26.2월) 및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26.2월)을 발표하여 교섭절차를 명확히 하였음 -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필요시 보완입법을 검토해나가겠음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4급 유현경 연락처 044-202-7609

(3) 노동시장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개정 노조법이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초기업 단위 교섭 확대·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의 부분도 우선하여 검토할 것	○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정법이 입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면밀히 진행해나가겠음 - 아울러 초기업단위 교섭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초기업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에 대한 연구 (노동연구원, '26년)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4급 유현경 연락처 044-202-7609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26.6월 말)·추진할 계획임 담당부서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5급 김대원 연락처 044-202-7742

(4) 개정 노조법 제2 · 3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에 대비하여 사용자 범위, 교섭의 절차, 쟁의의 범위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노동위원회와 협조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작성할 것	○ 개정 노조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범위 판단기준 등을 담은 해석지침을 마련('26.2월 확정)하였으며, -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발표하였음 * 노조법 2·3조 현장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 (노동부-중노위, '26.2.27.)
○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는 원청 경영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가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모의 원·하청 교섭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아울러 사용자성 관련하여 해석지침을 통해 기존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였으며, -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중심의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 등 대상으로는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4급 유현경 연락처 044-202-7609

(5)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적극적 중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구사대 폭력사태 과정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한 정황이 의심되므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등 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할 것 ○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과거 노동행정개혁위의 직접고용 시정 권고 및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	○ 노조,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청원('25.10.14)에 따라, -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근로감독 개시('26.2.13) ○ 해고자의 고용승계, 생계보장 등 실질적 권리구제가 우선인 만큼, - 노사가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4자 협의체* 논의도 적극 지원 중 * (使) 현대자동차, (勞)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이용우,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575, 7670

(6)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화오션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한화오션 사측이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관련하여 '26.10.22. 노조에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 우리부는 압수·수색 실시('26.1.13) 등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 한편, 노조는 노사간 합의를 이유로 고발 취하서 제출(2.3)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670

(7)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 기업에 대한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구제(원상회복주의)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외국에 비해서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한편, '25년 기준, 최근 3년내 부당노동행위로 2차례 이상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용자가 없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 형사처벌을 제재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특성 상, 상습적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검토 필요 * '25.1.20.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추가 제재방안 신설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정혜경 의원실 방문 설명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670

(8) 전 정부 노동행정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 정부에서 취약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주체로 접근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들이 필요	○ 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지급금」,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제도의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 취약 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실업급여」 등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노력 중 ○ 부정수급은 주로 신고·제보,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경찰의 법 위반 사실 통보 등), 기획·예방 조사*, 경찰청 합동조사 등**을 통해 조사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 시 환수 및 추가 징수 등 엄중 조치 (조사 주체: 대지급금 - 근로감독관,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실업급여 - 고용보험수사관) * 예: <대지급금> 다화고액 수급 사업장 등, <산재보험> 휴업급여 부정(부당)수급, 장해·중증요양상태 조작, 근로자성 및 재해경위 조작, 평균임금 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 분석 ** 산재보험의 경우, '26.3월까지 기획조사(휴업 및 간병급여 등 3건, 결과 취합 중) 및 경찰청 합동조사(재해경위 조작 등 1건 실시 중) - 향후에도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를 오인하여 환수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취약 노동자들이 대지급금 등 정부 제도를 활용하고자 신청할 때 신속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최다솜, 안영숙, 최대훈 연락처 044-202-7072, 7349, 8835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라는 노동 탄압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삭감된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복원하여 노동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것	○ 노조 자율성,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노동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합리적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 총 14차례 노동계, 전문가, 관련 부처와 논의 담당부서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5급 최성호 연락처 044-202-7694
○ 삭감된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복원하여 노동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것	○ '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원' 사업 복원(예산 5,680백만원 편성) - 연초, 공모를 통해 노동단체 25개소,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26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지원 중 *참고) '23년 사업 폐지 시 예산액 5,602백만원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5급 이지현 연락처 044-202-7604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 정부에서 취약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의 부정수급 주체로 접근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취약계층 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호 조치들이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자·노동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고용노동부가 관여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는지 확인·조사하여 보고할 것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자·노동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고용노동부가 관여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건설현장에서 채용절차법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처리한 바 있으나 강경 대응에 관여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22년 2차례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동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 화물연대 동향 파악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강경 대응 관련 조치에 관여하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향후 약자·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수립·시행하는 한편, 부당한 노조 혐오·탄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음 담당부서 노사관계지원과,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4급 오지영, 5급 김상진 연락처 044-202-7621, 044-202-7443
○ 전 정부에서 화물연대에 공정위를 동원한 노동 탄압이 이루어졌는데, ILO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였고 법원도 노동부의 행태가 틀렸다고 판단한 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노동자가 노동 탄압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 노동자와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담당부서 노사관계지원과 담당자 4급 오지영 연락처 044-202-7621

(9)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침 제개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건 강화로 체불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재개정할 것	○ 개정된 체불확인서 발급 지침이 체불액 확인을 위한 '임금자료'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취약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지연된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임금자료' 증빙 요건을 준수하기 곤란한 취약 노동자(예: 단기 노동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합한 보완자료 목록을 추가 기재하는 등 발급 지침을 연내 재개정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최다솜 연락처 044-202-7072

(10)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의 신속 추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예방과 감독을 확대하고, 강제수사와 엄중처벌이 사후적으로도 필요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법정형 상향,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양형위원회 협의 등을 실시할 것	○ 체불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4.7. 개정되어 '26.10.8.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과 양형기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노동부·법무부 합동 의견 제출('25.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신설을 결정하였음('26.1월)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11) 임금체불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관계법령으로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병, 신주 발행,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한 제재 방안과 장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기업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 과점주주 등 임금체불 책임이 있는 법인 배후의 개인에게도 체불청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26.3.6.) ○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상 사후관리 점검표 보완, 임금체불 반복 적발 시 인증취소 등을 통하여 점검 실효성 강화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5급 남덕렬 연락처 044-202-7482

(12) 수사 역량 강화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검찰 개혁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대비, 일선 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 - 전국 중대재해 수사 인력 · 조직을 기존 234명, 13과 2팀에서 529명, 34과 1팀으로 확대('26.2월)하였으며, - 수사 역량 강화 중심으로 감독관 교육과정·인원을 확대*하였음 * ('25년) 15개 과정 1,009명 → ('26년) 24개 과정 4,140명 - 전담 교육 기관 설치 등 교육 인프라 강화도 추진 중 ○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주요 수사 자료 공유, 교육 교류 등 협업 강화도 추진 중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13) 한국전력 섬발전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 ·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전력 섬발전 노동자의 불법 파견이 약 2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 개입하여 직접고용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및 조치하고 보고할 것	○ 진정사건('24.9.11 제기) 조사 결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177명 대상 직접고용 시정지시('26.2.11) - 직접고용에 따른 세부사항(근무장소, 담당직급) 협의를 위해 노·사 논의 중 * 노·사는 '26.4.20. 근로계약 체결 목표 - 원활하게 직접고용이 완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사 지도하겠음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류석호 연락처 044-202-7574

(14) MBC 특별근로감독 재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 오요안나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은 부실한 사실관계 조사 등 문제가 있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사에서 MBC를 제외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 해당 사안을 재조사할 것	○ MBC 특별감독시 고인의 근로자성 관련 구체적 사실 관계를 통해 엄정히 판단하였으며, - 또한, 고인의 유족과 MBC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 다만, 방송사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인력운용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상파(KBS,SBS)와 종편(MBN, JTBC, TV조선, 채널A)에 대해 기획감독 실시 * FD,AD,편집,CG등 프리랜서로 사용하는 총 216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 → 근로계약 체결토록 지도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15) 안전한 일터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랜드 기간제 직원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건이 지방관서에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고, 업무보고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없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안전한 일터 및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것	○ 강원랜드 사건, 직권 개선지도 실시 - ’25.10.22. 영월출장소, 직권 개선지도 - ’25.11.4. 사측, 조사 개시 - ‘25.12.2. 사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 ’26.1.16. 사측, 심의위원회 개최 - ’26.3.19. 영월출장소, 행정종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회적 물의 사업장 근로감독 등 엄정 대응 - 심리상담 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일터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오정택 연락처 044-202-7539

(16) 고 김충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태안발전본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노조 비가입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유가족, 노동조합, 지인 등을 만나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17) 퇴직연금 기금화 등에 대한 실효적 제도 설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독립적·전문적인 기관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	○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TF('25.10.~'26.2.)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기로 노사정이 합의(공동선언)함('26.2.8.)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대가 다수 있으므로 전문기관 등 단체 설립을 통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체제의 형성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공동선언 이행 등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설계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 중임('26.3.6.~) - 기금형 활성화의 핵심은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음 - 가입자 선택권 확대, 수탁자책임 등 수급권 보호, 전문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개선의 원칙이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4급 남덕현 연락처 044-202-7595

(18)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적극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주 과소 불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강제정산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며,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운용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예산 지원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 과소불입 사업장 및 가입 근로자에게 안내하면서 - 상습 부담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감독 후 미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하겠음 ○ 전담운영기관인 삼성자산운용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26.5~8월)이며,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등 도입방식을 검토할 계획임 ○ 상반기 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기금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감사)을 실시할 예정임 ○ 공단에서 요청한 증원인력의 수시직제(안)과 관련하여 재경부와 적극 협의 중 ○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전산인프라 구축(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비용 1,310백만원과 홍보 등 운영비 2,871백만원 반영을 위해 기금 변경을 추진 중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황민경 연락처 044-202-7557

(19)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 4.5일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동계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주 4.5일제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4.5일제의 논의시 소상공인 관련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대회기구 안에서 논의를 실시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 노사정 공동선언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25.12.30.) ▲(勞) 한국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使) 한국경총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 노사·전문가로부터 국정과제 + 논의 희망 의제* + 주요 현안을 수렴하고 총 25차례 논의('25.9~12월) *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청취(10.27, 11.3)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12.3) 안건으로 상정하여 함께 논의 〈주요 내용〉 ◆ **(노사정 공동선언)** '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1,700시간대)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 ◆ **(로드맵 추진과제) 주요 국정과제**를 노사정 합의로 추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노동시간 제도 적용제외·특례업종 개선,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등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상황 ①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1.14.) *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 로드맵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논의(1.14, 2.10, 3.20) ②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1.28. 박해철 의원) * ▲노사의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실근로시간단축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휴가의 분할 사용 등 사업장의 일·가정 양립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③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쉴 권리 보장 등 관련 입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정)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관리,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반차 등 시간단위 연차 사용, ▲4시간 근무 시 휴게 시간 자율 선택 등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입법 前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조속 개선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4.9) ④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주4.5일제 도입 및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26년 324억원) * (주 4.5일제 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276억원, ▲주4.5일제 특화컨설팅: 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1억원 ⑤ 장시간 노동·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대상 기획감독 * ▲(장시간) '26년 약 200개소 ▲(포괄임금 오남용) '26년 약 200개소 ⑥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연구용역 계약(3.4.), 자문 TF 운영(3.18~)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4급 어일천 연락처 044-202-7617

(20)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균형잡힌 추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인력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	○ 노사정 공동선언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25.12.30.) ▲(勞) 한국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使) 한국경총 부회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 노사·전문가로부터 국정과제 + 논의 희망 의제 + 주요 현안을 수렴하고 총 25차례 논의('25.9~12월) 〈주요 내용 〉 ◆ **(노사정 공동선언)** '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1,700시간대)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 장시간 노동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성 혁신 등으로 뒷받침 ◆ **(로드맵 추진과제)**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운영 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검토 ▲시차 출퇴근·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정부 지원근거 마련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 상황 ①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1.14.) * 노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 로드맵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논의(1.14, 2.10, 3.20) ②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1.28. 박해철 의원) * ▲노사의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연결되지 않을 권리, 휴가의 분할사용 등 사업장의 일·가정양립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③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주4.5일제 도입 및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26년 324억원) * (주 4.5일제 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276억원, ▲주4.5일제 특화컨설팅: 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1억원 ④ 노동시간 관련 애로사항 및 현행 제도의 개선·활용 등에 관한 의견 수렴(3.10, 3.20) * (대상) 벤처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4급 어일천 연락처 044-202-7617

(21)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업과의 상생, 소통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노력하였고, - 1기 경사노위('26.3월 발족) 및 노사정담*('26.3월 신설) 등 노사정 대화 채널에 적극 참여 중임 * 노사정 대표 월 1회 정례만남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총과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를 신설('26.2월)하여 안정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 월 1회 실무협의체,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개최 ○ 향후에도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경영계와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노사상생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25년 9~12월간 경영계 25회, 100여개 기업, 노동계 18회, 52개 단체와 논의 담당부서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5급 김송이 연락처 044-202-7744

(22)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재구조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예방적 관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방지도 등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교육, 채용, 재교육 등 전면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	○ 체불, 산재 등의 노동현장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을 타켓팅하는 등 선제적 감독으로 전면 개편 - 증원 감독관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법을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존 이론중심 교육에서 표준 기본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보는 체험·실습형으로 교육체계 전면 개편 지속 추진 - 감독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분야 경력자 채용, 보직 관리 체계 강화, 특별승진 등 다양한 방식의 채용, 유인구조 및 평가체계 설계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1.14.), 추진 중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협력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운영지원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오정희, 고상호, 정재훈 연락처 044-202-7528, 7824, 8904, 7864

(23)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량이 임용 포기자·퇴직자 발생 등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감독 업무의 질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더불어 근로감독의 체계적·효율적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근로감독관의 단결권 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것 ○ 8급·9급 근로감독관의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까지 근로감독관을 6·7급으로 1300명 증원한다는 계획만 있어, 이들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과 처우 개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증원 감독관의 신속한 현장 적응과 역량확보를 위해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체험·실습형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고, - 역량있는 감독관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 체계 및 특별승진 경로 마련 등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유인구조 및 평가체계 설계 - 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1.14.), 추진 - 또한 감독관의 단결권 보장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의 특성,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안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 ○ ’25~26년 시기별 증원 규모를 고려하여 ’25. 12월말 6급 이하 승진심사를 기실시하였고, ’26년에 반기별(6월, 12월) 실시 예정으로 이를 통해 그간 누적된 승진 적체 해소 노력 중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협력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공공노사관계과, 운영지원과 담당자 5급 박라영, 오정희, 고상호, 강재영, 정재훈 연락처 044-202-7552, 7824, 8904, 7698, 7864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 낮은 처우, 불투명한 승진 구조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근로감독관 직무 교육 개선, 경력 활용 등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신설된 경찰청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등과 연계한 협업 구조 마련 등 효과적인 근로감독 방안을 검토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의 미처리 비율이 24년도에는 78.2%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2028년도까지 약 3000명의 근로감독관을 증원할 계획인바, 근로감독에는 수사역량이 전제되어야 하고 인력확충보다 양질의 감독이 더 중요하므로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은 수사 관련 통계 시스템을 보완할 것	○ 증원 감독관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법을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표준 기본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보는 체험·실습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 역량있는 감독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승진 경로 마련 등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유인구조 및 평가체계 설계하는 등 - 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 발표(1.14.), 추진 ○ 또한 경찰청과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본청·지방청에 감독관을 파견(2.9, 7명)하는 등 인적 교류를 실시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차 참여 등도 추진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감독협력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운영지원과 담당자 5급 박라영, 오정희, 고상호, 양재경, 정재훈 연락처 044-202-7552, 7824, 8904, 8961, 7864

(24)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근로감독관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 근로감독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하고, - 인사혁신처와 근로감독관을 취업심사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협의 ○시행령 개정 이후 취업심사 대상 확대에 따른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겠음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5급 양민호 연락처 044-202-7807

(25) 효율적 근로감독 방안 모색 및 불시 감독 비율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로감독 물량을 대폭 늘리되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ILO의 원칙인 불시 감독 비율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늘려갈 것	○ '26년 근로감독 물량을 4만개로 대폭확대('25년 2.8만) - 체불전수조사·감독, 재직자 익명 제보 감독, 가짜 3.3감독, 국토부등 부처 합동 감독 등 현장 작동성 높은 실효적 감독 중심 추진 - 정기감독 대신 수시감독 비중을 대폭 확대 하여 불시감독 강화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26)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 재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 연차별 증원 계획의 산출 근거를 재검토하고,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 배치된 국가직 9급 공무원 97명이 임용을 포기한 상황에서 증원 계획의 현실성 및 근로감독관 관련 예산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예방적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 규모 등을 토대로 증원계획 마련·추진 - 예산 규모도 증원계획에 따라 확대 편성하였음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신유진, 박라영 연락처 044-202-7971, 7552

(27)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적정성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일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 취하를 종용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진정인에 대한 취하 종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지방관서에 문서 시달, '25.11.19.)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김보경 연락처 044-202-7521

(28) 임금구분지급제 시스템 구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임금체불의 70% 이상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임금구분지급제 등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민간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4.7. 공포되어 '27.1.1. 시행될 예정 - 앞으로도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29)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장려금 등 재구조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내국인 노동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는 방안 등 전면적 재구조화를 실시할 것	○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권익 침해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 - 현재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중 * 입법예고('26.3.6.~4.15.), 시행일('26.6.1.) - 기존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주에 한정되던 장려금 지원제한 대상을 상습체불사업주까지 확대하여,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을 강화하겠음 ○ 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의제 가입한 사업장 등의 소속 노동자에 대해 대지급금 제도 운영 중 -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재직자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에서 국가가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므로,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1인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지원하는 외국인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비하여 지원 규모가 큰 편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기업일자리지원과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이찬웅, 5급 정호태, 5급 최다솜 연락처 044-202-7529, 7213, 7072

(30)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종합적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인 사람들만 공식 통계로 집계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통계에 대한 총괄 파악 및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	○ 우리부는 현재 소관 부처(국방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자료를 받아 군인·소방관 등의 업무상 재해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책자에 수록(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 앞으로 범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통계를 파악해나갈 계획임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김건우 연락처 044-202-8815

(31)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후속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사건 봐주기식 수사 의혹,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의혹 등에 대하여 억울한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	○ 의원실 서면보고('25.10.25.) - 쿠팡풀필트먼트가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함에 따라('25.10.27.), 그간 퇴직금 미지급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퇴직금을 소급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및 지급 상황** 모니터링 중임(계속) * 변경내용: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 삭제 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으로 수정 ** '26.3월말 기준 총 2,231명에게 퇴직금 20.7억원 지급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유건택 연락처 044-202-7689

(32) 공정한 감독을 통한 쿠팡 노동환경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쿠팡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개인 친분, 노동현장의 감독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쿠팡으로의 이직, 서울 강남지청 감독관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쿠팡과의 정경유착이 의심되는 문제가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인 자구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한 감독을 통해 쿠팡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	○ 고용노동부는 '26.1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고 쿠팡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 및 수사를 진행중에 있음 ○ 감독·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쿠팡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근로감독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방안 마련하고, - 인사혁신처와 근로감독관을 취업심사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협의하고 있음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류석호 연락처 044-202-7574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강숭훈 연락처: 044-202-8914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5급 양민호 연락처 044-202-7807

(33) 외국인투자기업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책임 미이행으로 인한 노동자 권리 침해가 심각하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지도 등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김주영 의원실에 보고('25.11.10) - 국회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 마련 지원 병행 *「외국인투자촉진법」,「근로기준법」및「상법」등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 패키지 법안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5급 이재근 연락처 044-202-7637

(34) 물가상승을 고려한 노동정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2~3%인 상황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 등 생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 물가 상승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저임금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됨 ○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물가 등 현장 여건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취약 노동자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上 예정) 마련,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로드맵」('26.上 예정) 수립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담당부서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5급 김송이 연락처 044-202-7744

(35) 월 자율근무제 시범 도입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월 근무일의 총량을 정한 후 근무일자를 노동자가 자율 선택하게 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습·가사 등을 위한 시간 선택권을 제공하는 '월 자율근무제'를 쿠팡CFS 또는 쿠팡CLS에 시범 도입할 필요성 있음	○ 월 자율근무제는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미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도입하는 방식으로 검토 가능 ○ 향후 기업이 시범 도입을 희망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노동관계법·제도와의 정합성 및 노동자 등 노동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5급 김영덕 연락처 044-202-7616

(36) 임금체불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책임지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임금체불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책임지는 방식의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	○ 과점주주 등 임금체불 책임이 있는 법인 배후의 개인에게도 체불청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26.3.6.) - 체불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37)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재고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재고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양국 NCP(OECD 국내연락사무소) 간 협력 및 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국 NCP 사건에 니토덴코가 조정에 참여하도록 양 당사자 동의 하에 당초 '25.12.22.까지였던 조정기간을 '26.6.22.까지로 연장하여, 이를 통해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한국 NCP, 노동조합, 니토덴코 측과 조정 개시를 위해 의견을 교환·조정 중에 있음 ○ 우리부는 노동자 재고용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관계사인 니토옵티칼을 면담 및 지도하는 동시에, 노사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주선 노력 등을 지속하고 있음 ○ 향후 조정기간 내에 양측이 조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화가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국제개발협력팀 담당자 5급 김은아 연락처 044-202-7164

(3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협력체계 활성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과 관련된 지자체의 책무 역할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협력체계 등을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26.4.7. 공포, '26.12.8. 시행) - 동 법률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2조) 배치, 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사업장 감독권한 지방 위임(제28조), 근로기준에 관한 통일적 적용을 위한 중앙·지방협의 의무(제32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음 담당부서 근로감독협력과 담당자 5급 류한석 연락처 044-202-7826

(39) 이랜드리테일 특별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랜드리테일이 일부 직원들을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동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바 이는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	○ 퇴직 노동자(7명),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25.12.31)하여 수사 중 -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히 조치하겠음 * (수사 경과) '26.2.13 고소인 조사, '26.4.3 사측 관계자(법무본부장) 조사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류석호 연락처 044-202-7574

(40) KAI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해결 위한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KAI에 대한 정부의 사업 중단 및 임직원 해임, 임직원에 대한 부당 징계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954기 등 불이익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KAI 사건, 괴롭힘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25.9.23. 진주지청, 사건접수 - ’25.10.1. 진주지청, 신고인 조사 - ’25.11.13. 사업장 개선지도 - ’26.1.20. 피신고인 조사 - ’26.2.5. 사용자 괴롭힘 확인 후 과태료 부과 ○ 괴롭힘 사건에 대해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해 원칙에 따라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오정택 연락처 044-202-7539

(41) 국선노무사 수당 지급 지연 문제 해소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각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국선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정 예산 확보 방안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당초 사업비로 편성되던 대지급금 조력지원 예산이 '24년부터 폐지되어 사업운영비(경직성 경비)로 지출되면서 보수 지급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7년 예산 편성시 사업비 예산으로 복원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우이용 연락처 044-202-7563

(42)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부당노동행위 신고 건수의 44%가 시정조치 등 행정종결, 45.2%가 불기소 의견 송치되어 단 10%만이 기소 의견 송치되고, 송치사건 중 기소율도 기소의견 송치 비율보다도 낮은 14.3%이며, 법원에서의 선고형도 56.1%가 벌금으로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낮음. 이처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부당노동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법 준수를 위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을 마련할 것	○ 부당노동행위의 기소율이 낮은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 엄격한 범죄 구성요건, 노사 협의를 통한 사건 취하 등 복합적 이유가 있음 - 또한,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보다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이 점차 증가한 것도 영향 * (진정사건 비율) '17년 26.1% → '19년 32.5% → '22년 37.7% → '23년 48.4% → '24년 49.7% → '25년 59.7% ○ 부당노동행위 발생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밀착하여 모니터링* 강화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겠음 * '24년 450개소 → '25년 570개소 → '26년 600개소 ○ 한편, 제재수단 신설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필요성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종합적 검토 필요 * '25.1.20.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추가 제재방안 신설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정혜경 의원실 방문 설명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670

(43) 지청별 부실조사 건 확인 및 시정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필립모리스, 한국니토옵티칼 등 사안에 대하여 부실조사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부실조사 건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한 후 보고할 것	<필립모리스> ○ 필립모리스 괴롭힘 사건 경과 - '25.2.13. 서울남부, 진정서 접수 - '25.3.5. 당사자 조사 및 개선지도 - '25.5.1. 사측, 개선지도 결과 제출 - '25.5.22. 사측, 추가자료 제출 - '25.7.3. 서울남부, 행정종결 - '25.7.8. 처리결과 당사자 통보 * 사업주의 성희롱 조사 절차 및 조치 등에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없음 ○ 진정인은 조사 및 조치 결과에 이의제기, 재진정 없었음 ○ 신고사건 접수 시 철저한 조사 및 사회적 물의 사업장 근로감독 등 엄정 대응 - 감독관 수사 전문성,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을 위한 교육도 지속 실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5급 오정택, 5급 정희성 연락처 044-202-7539, 044-202-7546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필립모리스, 한국니토옵티칼 등 사안에 대하여 부실조사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해당 부실조사 건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한 후 보고할 것	<한국니토옵티칼> ○ 보건관리 실태조사('25.6.25.~8.14.)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중 - 안전보건진단명령(9.10.),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12.3.) * 시설개선(국소배기장치), 작업환경개선 등 27건(~'26.5.29.) ○ 산재은폐 및 미보고,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여부 조사 후 후속조치* 실시('25.12.10.~12.16.) * '22년 하반기 1개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누락 확인(과태료 460만원)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4급 윤현욱, 5급 강숭훈 연락처 044-202-8873, 044-202-8914

(44) 대유위니아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안 보고 및 수사 의뢰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안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대유위니아가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파산했다는 등 임금채무 회피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으로 사기죄, 상습임금체불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것 ○ 고용노동부는 대유위니아의 임금채무 회피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황이 드러나면 타 부처와 함께 노력하여 수사 및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에 관련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소·고발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출국 정지, 구속수사. 기획감독, 임금채권 우선변제 지도 등 강력하게 대응해 옴 ○ 대유위니아 사례와 같이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용자 개인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법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 임금 체불의 책임이 있는 법인 배후 개인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안 등 검토하고 있음 * <임금채권 회수 강화 관련 연구> 추진, '25.11~12월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근로기준정책과,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김보경, 5급 이찬웅, 5급 최다솜 연락처 044-202-7521, 7529, 7072

(45) 법인 제도 및 파산 제도를 임금체불 변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조사 및 대응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규모 임금체불 이후 임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 제도 및 파산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개별 사업장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악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법원, 국세청과의 정보 실시간 공유, 직권조사, 합동근로감독, 과점주주에게 변제금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개정법 소급적용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계획과 대책을 보고할 것	○과점주주 등 임금체불 책임이 있는 법인 배후의 개인에게도 체불청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26.3.6.) - 체불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겠음 ○국세청과 소득자료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합동 근로감독 강화 - 필요시 국세청과 협업하여 세무조사 검토 요청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46)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다른 계열사 지분 보유량을 늘리는 등 경제력이 있음에도 대규모 임금체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금액 이상 임금체불한 회사의 합병, 신주 발행,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와의 협의 등 노력할 것	○ 과점주주 등 임금체불 책임이 있는 법인 배후의 개인에게도 체불청산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26.3.6.) - 체불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47) 외국인 노동자 대상 중간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실태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을 브로커가 중간착취한 사안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수취한 임금을 원칙대로 사용자인 농민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농민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를 보장하지도 못하는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선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이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중간착취 실태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며, 고용노동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브로커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 계절노동자 노동·법무부·지방정부 합동점검 실시('26.1월~3월) ○ 계절노동자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제도개선 방안 관련 협의 추진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실 담당자 5급 김진아, 5급 노대윤 연락처 044-202-7152, 7739 ○ 양구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 - 중간착취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하였고, 검사 수사지휘 의견에 따라 송치 계획 - 농민들의 임금체불 사건에 임금체불 고의성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한편, 피해 노동자 채권 확보를 위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체불임금 일부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김보경 연락처 044-202-7521

(48) 이행강제금 강제력 강화 방안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울산 자일대우버스 169억원 등 총 391억원에 달하는바 이행강제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행강제금 강제 방안을 검토하고, 자일대우버스 사업장과 같은 노동조합 혐오성 위장폐업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현행 제도상 사용자가 이행강제금 미납 시 사업주 재산을 강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울산 자일대우버스의 경우 1~4차 이행강제금 모두 대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추가적인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집행정지 해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압류 등 징수 절차 개시 예정 -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 ※ 징수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 체납처분(독촉, 압류) 강화 등 ○ 우리부는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에 위법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음 - 아울러, 자일대우버스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당노동행위 징후가 보이는 사업장에 대해 갈등 초기부터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음 ○ 한편, 울산지청은 '20년 7월 사측의 경영상 해고 이전부터 자일대우버스를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 '20년 당시 부산청과 울산지청이 노사를 만나 지도하는 등 울산지청은 총 30차례 이상 자일대우버스 노사를 만나 지도한 바 있음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담당자 5급 김택수, 5급 구진회 연락처 044-202-7670, 044-202-8363

(49) 고소·고발 사건 시정지시 관련 지침 개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지침상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의 처분 이후 시정지시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가 곧바로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즉시 시정지시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개정('26.2.11) 하여 - 감독·진정사건과 고소·고발 사건 간의 시정지시 시점 차이를 해소 **변경전** **2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기** 3. 고소·고발사건의경우 ㅇ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관서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 후 검찰에서 다른 판단(혐의없음, 불법파견범위축소 등)을 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결론이 동일할 필요 - 따라서, 지방관서는 **검찰에서 불법파견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시에 지체 없이** 대상근로자 확인 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여야함 **변경후** **2 직접고용 시정지시 시기** 3. 고소·고발사건의경우 ㅇ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제기한 근로자 중 사건의 수사 등을 통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 시** 대상근로자 확인 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이용우 연락처 044-202-7575

(50)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매뉴얼 개정 필요

<table>
<tr><th>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 형사소송법과 법무부령 수사준칙에 따르면 파견법 등은 필요적 수사지휘, 입건지휘 대상이 아니며 수사·기소 분리가 2026년 예정되어 있는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규정한 고용노동부 수사 매뉴얼을 개정할 것</td><td>○「파견법 수사매뉴얼」 개정('26.2.11)
- 불법파견 사건 등에 대한 필요적 수사지휘건의 규정 삭제
<table><tr><td>변경전</td><td>나. 필요적 수사지휘건의
1) 중요범죄의 입건
ㅇ 대규모 사업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감독 청원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미이행으로 입건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사지휘를 건의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입건하는 것이 필요</td></tr><tr><td>변경후</td><td><u><삭제></u></td></tr></table>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류석호
연락처 044-202-7574</td></tr>
</table>

(51)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적 권한의 불충분한 행사로 인해 불법이 반복되는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 권한을 활용할 것	○ 불법파견과 관련한 내부 지침 등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와 적극적 수사권 활용을 뒷받침 *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지침」 및 「파견법 수사매뉴얼」 개정('26.2.11) ○ 아울러, 지속적인 감독, 수사 사례 교육을 통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수사권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음 * 한화오션 사측의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 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6.1월 압수수색 실시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류석호 연락처 044-202-7574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670

(5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신중한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막중한바 이를 고려하여 제도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것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 적용 확대 조항·시기,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 예정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4급 이재인 연락처 044-202-7544

(53)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아리셀 참사 이후 제조업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불법파견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	○ 영세제조업체의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불법파견 감독, 인사노무 종합 컨설팅 실시('24.7월~11월) - (감독) 아리셀 사고 후속조치 → 전국 산단 영세제조업 불파 감독* * 총 229개소(원청 115개소, 하청 114개소) - (컨설팅) 불법파견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독과 연계한 인사노무 종합컨설팅* 실시 * ▲[필요성] 만성적 인력난, 물량변동, 채용역량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불파 관행 지속 → 단순감독 한계, 인력난 해소+노무관리역량 제고 등 종합지원 필요 ▲[컨설팅 주요내용] ❶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촉진을 위한 수당신설, ❷신규채용 지원(채용박람회 개최 등), ❸'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지도, ❹고용센터 연계 고용지원금 지원(워라밸, 고령자), ❺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등 ○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위한 감독, 고용구조컨설팅, 채용지원 등 종합적 개선책을 지속 추진 - (감독) '25년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 등 212개소 실시 - (컨설팅) 파견·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감독 중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연계('25년 15개소)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5급 이용우, 류석호 연락처 044-202-7575, 7574

(54) 임금체불액 산정시 지연이자 포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등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체불액을 산정하는데 반해 일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은바 통일성 있게 지연이자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현행 법령상 지연이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정기적으로 지급을 약정한 임금 등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액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연락처 044-202-7529

(55)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축소로는 한계가 있는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검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인 사용자가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	○ 현장에서 반의사불벌 제도가 사용자의 체불 조기청산 유인으로 작동하는 점도 고려, 반의사불벌 제도 개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 행위자가 스스로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면서 발생 가능한 객관성·공정성 우려에 공감하며 -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 및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이찬웅, 5급 오정택 연락처 044-202-7529, 7539

(56)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연구원 소속 20대 청년이 가해자로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하면서 경제적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	○ 괴롭힘 조사 및 분쟁 해결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 중장기적으로 근거법령 마련 및 예산 반영 필요 - 관련 법안 발의 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협조 및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오정택 연락처 044-202-7539

(57) 지역방송사 특별근로감독 적극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KBS 지역방송총국 등 지역방송사에서 프리랜서 부당해고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바 중앙방송사 기획감독뿐 아니라 KBS 청주방송총국을 포함한 지역방송사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할 것	○ KBS 청주방송국에 대한 감독 착수('26.2.12) 후 진행 중 - 이후 청원 감독 등을 통해 지역 방송사에 대한 추가 감독 추진 중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58)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정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고용노동청 지청마다, 근로감독관마다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판단 기준을 정립할 것	○ 근로감독관의 교육생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을 돕기 위하여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시달('25.11.20.) 및 사업장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26.4.10.)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4급 이재인 연락처 044-202-7544

(59) 한국공항공사 인건비 낙찰률 문제지도 감독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국공항공사의 인건비 낙찰률 제도로 인하여 인건비가 보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평가 권한을 이용하여 지도 감독할 것	○ 자회사 평가 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 예정 (26년 평가) - 산출된 예정가격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배점 확대 - 낙찰률 이슈로 사회적 물의 야기시 최종 평가등급 하향 검토 * 또한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중 (상반기중 만족도 조사 시범실시 후 금년 평가부터 반영 예정) ○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마련·추진 등을 통해 합리적 도급 운영 도모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담당자 5급 이동훈 연락처 044-202-7681

(60) 노동자 전자감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자 전자감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감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향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4급 이재인 연락처 044-202-7544

(61) 런던베이글뮤지엄 전체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로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쪼개기 계약, CCTV 감시와 시말서 작성, 비밀유지서약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계열 업체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기획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노동기준 분야> ○ '25.10.29 감독 착수 후, '26.1.31 실시 완료 - 범죄인지(형사입건) 5건(기소 송치) 과태료 63건(8억1백만원, 납부 완료) 시정지시 19건 적발(시정 완료)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산업안전보건 분야> ○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계열사(1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25.10.29~'26.1.31) 실시 - 사법조치 3건, 과태료 61건 319백만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조치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고상호 연락처 044-202-8904

(6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처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쿠팡의 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이 전국 여러 지청에서 신고된 퇴직금과 관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들에 대해 일관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	○ 퇴직금 등 관련 취업규칙 처리 방안 지도 예정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4급 이재인 연락처 044-202-7544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5급 유건택 연락처 044-202-7689

(63)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관리자들이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요하고 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관리자가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실제로 대납해주는 등 이마트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국정감사 시 정혜경 의원실에서 의혹 제기한 직후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교대노조)에 사실관계 확인한 바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동 사안 관련 국정감사 종료 후 의원실 방문 설명('25.11.14) ○ 해당 사업자에서 노·사 및 노·노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음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670

(64)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 규제로 인하여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의 재직자 상당수가 주 5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에 유연적인 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 '25.9.10.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한국벤처기업협회 주관)에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들음 - '25.9.30, '26.3.10. 벤처·스타트업 산업의 대표 협회·기업 관계자를 만나, 각 산업 분야의 노동시간 관련 애로사항 및 현행 제도의 개선·활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 진행 * (참석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도가 있음에도 전반적인 제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유연근로제 활용률) 탄력근로 9.3%, 선택근로 6.5%, 재량근로 1.9%(25년 기준) - 노·사 모두가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점검단을 통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4급 어일천 연락처 044-202-7617

(65) 특별연장근로 제도 운영의 엄격한 관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부가 상시인력 부족, 납기 대응, 생산 일정 등 예측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업무량 폭증이라는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를 제도적으로 허가하는 구조가 되고 있으므로,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과 건강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25.12.30.)에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과 운영 개선 내용을 포함 **〈로드맵 추진과제 〉** □ 장시간 노동 개선 ㅇ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운영 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검토 -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개선 방안 마련 예정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5급 박노완 연락처 044-202-7618

(66) 전 생애 노동교육 추진계획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교육이 단발성 교육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최소한의 노동법 등 기본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 및 비임금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업주까지 생애 전 주기 노동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우리부는 학생부터 퇴직자를 아우르는 대국민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국정과제94-1)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박홍배 의원실에 보고('25.12.1) - 앞으로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입법 지원 등을 통해 '전 생애 노동교육'을 차질없이 추진 예정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5급 송명찬 연락처 044-202-7591

(67) 요양보호사 자체대근비 관행 특별근로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서울시 산하 병원 호스피스 병동 내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위탁업체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차 사용 시 자체대근비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바 이는 사실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것	○ 국정감사 지적 후, 관할 지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직접 지도를 통해 조치 완료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법 위반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5급 김영덕 연락처 044-202-7616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박종길 연락처 044-202-7528

(68) 이석관리제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주요 게임기업을 중심으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15분 단위 이석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직업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근태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석관리제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업장에서 이석관리제로 노사 갈등 등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석사유 등 인정범위 등에 대해 노사간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도 및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5급 변재연 연락처 044-202-7541

(69) 야간노동 규제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지속적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또는 최장 노동시간, 연속 근무일수에 대한 제한 등 야간노동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해외 사례 분석,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관리방안 마련 中 -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착수(3월~) → 결과 발표(~6월 말) → 건강보호 대책 마련 * 법률·안전보건·통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야간노동 실태조사 자문TF」 운영 병행 담당부서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담당자 4급 어일천 연락처 044-202-7617

(70) 대지급금 변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변제하는 사업주에게는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변제가 기업의 회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도 소유 재산상태 및 적극적 변제 의사를 감안하여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등 신청 가능 - 이 때, 분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유예되며, 약정을 준수하여 대지급금 미수금을 완납한 경우 대지급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 중 ○ 다만, '26.5.12.부터 변제금 징수 시 국세체납처분절차가 도입되면 체불 사업주의 신속한 변제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최다솜 연락처 044-202-7072

(7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폐지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해야 된다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가 발간된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에서 부적절한 인사평가, 조합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	○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확고한 입장임 ○ '24년 인사평가 시 조합원 불이익 조치에 관련, '25.11월 노조에서 사건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청에서 수사 중임 - 한편, 동일 사안에 대해 '25.5월 노조가 제기한 부노 구제신청에 대해 '25.7월 서울지노위가 부노로 인정했고, 사측이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됨 - 서울남부지청은 노동위의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관련해서도 직권으로 조사 중임 *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사 및 조사 중인 사안 관련하여 위법사실 확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김택수 연락처: 044-202-7670

(72)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부문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바 공공부문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간 비례 수당 지급 등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 공공부문의 초단시간 노동자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초단시간 근로계약 남용방지 등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예정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과 담당자 5급 유진경 연락처 044-202-7662

(73) 노동위원회 조사관 경력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 부여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과거처럼 노동위원회 조사관 경력자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공인노무사 시험의 여러 과목을 면제하는 등 제도설계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노동행정 종사 공무원(노동위 조사관 포함)에 대한 1차 및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과거 폐지된 자동 자격 부여를 부활하거나, 시험 과목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시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김형준 연락처 044-202-7527

【산업안전보건 부문】

(1) 치명적 부상에 대한 별도 집계 및 데이터 축적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치명적 부상도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치명적 부상을 별도로 집계하고 데이터로 축적할 것	○ 우리부는 현재 업무상사고 재해자의 재해정도(요양기간)별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현황분석 책자에 수록(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통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임('26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별도의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원인조사를 실시할 예정 * '26.12.1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김건우,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815, 8952

(2) 산업재해에 대한 종합감독체계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는 단일한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 또는 근로기준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종합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25년부터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독을 실시 중 ○ '26.1월「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노동 + 산업안전 통합감독' 확대 포함·발표 ○ 향후 복합문제 사업장 대상 통합감독 지속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3) 위험도에 따른 구분 감독 체제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 발생 증감률, 조치 이행률 등을 고려해서 고위험 사업장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저위험 사업장은 자율점검을 강화하되 무작위로 점검하는 전면적 위험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구분 감독 체제 마련을 검토할 것	○ 산재 이력 및 위험요인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26년 약 10만개소) - 해당 사업장 전수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여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 자체 점검 미이행 사업장 및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점검 실시 예정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4) AI 도입을 통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자기규율형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AI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중소사업장이 AI를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검토 - 사업장의 사진 등을 입력하면 위험요인과 조치사항을 출력하는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개발 중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5급 김두진 연락처 044-202-8923

(5) 산업단지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기준 산업단지의 95%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증원예정인 지자체 감독관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집중관리할 것	○ 산업단지 등 제조업 밀집 지역 점검 확대를 위해 - 산업안전감독관 증원과 연계하여 감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상시패트롤 점검 신설·추진 중** * '25년(계획) 2.4만 개소 → '26년 5만 개소 ** (패트롤카) '25년 146대 → '26년 286대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 지방정부 감독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음 * '26.4.7. 제정, '26.12.8. 시행 예정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6) 소규모 현장 인근 지자체·경찰청 운영 CCTV 등 활용을 통한 안전일터 조성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건설 현장 안전 관련 소규모 현장에서는 CCTV 등 스마트 장비들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설비가 갖춰지기 전까지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소규모 현장 인근 지자체나 경찰청이 운영하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상황에 대비할 것	○ 중앙-지방간 산업재해 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진행 ('26.4.10.) - 지방정부가 현장 방문, CCTV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관리 미흡 건설현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하여 점검 및 기술·재정지원과 연계 추진 ○ 운영 중인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건설 현장의 위험상황을 개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4급 유종호 연락처 044-202-8936

(7) 근로자 안전조치 준수 인식 제고 및 의무 부과 등 방안 모색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기업처벌 위주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처벌의 예방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조치 준수 인식 제고 및 의무 부과 등 방안을 모색할 것	○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진행 ('26.4월~10월) * 「사업장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규범 이행력 확보 방안」 ○ 연구 결과, 현장 의견 등을 참고하여 노사가 함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검토 예정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4급 정은경 연락처 044-202-8808

(8)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병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산재노동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재병원이 없고 산재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산재병원 설치 검토 -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타당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 제출(기획처, '26.1분기) - 산재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대도심에 외래재활센터 설치하여 전문재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재 4개(서울, 광주, 부산, 구미) 외래재활센터 운영 중이며, '27년 1개소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최대훈 연락처 044-202-8835 ○ 작업중지권 관련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여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정대성 연락처 044-202-8929

(9) 작업중지권 제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이 활성화된 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산재발생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작업중지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 사업 구조인 건설현장의 작업중지권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토부, 대한건설협회 등과 협업하여 건설업 작업중지권 우수 사례 발굴, 실무자용 매뉴얼 등을 마련·배포 예정 ○ 아울러,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관계수급인의 사업주 외에 도급인에게도 작업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진행 중임 * 법 제51조제3항 신설('26. 2. 23. 법사위 의결 후 본회의 계류 중)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정대성 연락처 044-202-8929

(10)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부가 기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평가를 실시한 이후 노동안전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진단을 실시할 것 ○ 노동안전과 산업재해 부분에서 예방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무 주체, 사업주, 도급인 등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보완할 것 ○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후관리 관련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점검·감독 후에 개선 확인 등 피드백을 통한 사고 재발 방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유가족 및 산재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사항이 부재하므로 유가족 보상금 인상 등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산재 예방 분야의 사업의 현황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	○ 우리부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25.9.15)을 발표 - 향후, 산재예방대책의 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한일터위원회」를 설치하여, -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이에,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25.12.8)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중에 있음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김건우 연락처 044-202-8815

(11)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병원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산재병원의 지역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산재노동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산재병원이 없고 산재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산재병원 설치 검토 -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타당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서 제출(기획처, '26.1분기) - 산재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대도심에 외래재활센터 설치하여 전문재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현재 4개(서울, 광주, 부산, 구미) 외래재활센터 운영 중이며, '27년 1개소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최대훈 연락처 044-202-8835

(12)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쿠팡을 포함한 반복 산재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 SPC와 같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쿠팡 조치> ○ 반복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의식불명, 신체훼손 등 중상해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추진 중('26년 1천개소) ㅇ 쿠팡 및 계열사의 경우, 국회 청문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중심으로 감독 진행 중('26.3.16.~) -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음 <공공사업 참여 제한>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행 규정 및 개선방안 검토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확대 과제 추진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온남이, 4급 정은경 연락처 044-202-8902, 8808

(13) SPC의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SPC의 반복적 산재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SPC에서 최근 3년간 반복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이 비상정지 장치 부재·미작동 및 자율안전확인 제도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기인하는바 SPC 사고가 났던 현장의 기계들, 같은 모델의 기계들의 작동 현황을 점검하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고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 SPC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기계·설비와 동종·유사설비의 안전조치 적정 여부 점검 실시 ('25.11~12월) - 점검 결과, 총 6개 계열사에서 28건 시정지시 하였음 ○ '25년부터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독을 실시 중 ○ '26.1월「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노동 + 산업안전 통합감독' 확대 포함·발표 ○ 향후 복합문제 사업장 대상 통합 감독 지속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14)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종합적 근로감독체계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SPC 사망사고는 시설결함과 노동조건의 문제가 결합되어 일어났고, 장시간 노동, 심혈관계질환 등은 대부분 근로기준 위반으로 발생하는 등 근로기준 위반이 산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나 산업안전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주로 감독을 하여 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 제도상의 미비가 있으므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근로감독체계를 마련할 것	○ '25년부터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합동감독을 실시 중 ○ '26.1월「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노동 + 산업안전 통합감독' 확대 포함·발표 ○ 향후 복합문제 사업장 대상 통합감독 지속 추진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15) 끼임 관련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복 재질 개선 및 AI활용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끼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들에는 끼임 발생시 힘을 주면 찢어지는 재질의 작업복으로 개선하는 방안, 야간 시간의 안전관리 공백에 AI를 활용하는 방안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	○ 노동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복 개선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국·내외 기준, 사업장 적용 사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 야간작업 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음 - 재해발생 시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5급 허효수 연락처 044-202-8853

(16) 공공부문 산재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부문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민간과 동일한 기준에서 유감 표명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할 것 ○ 코레일 사고 이후 공공 분야 산재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민간과 동일한 잣대로 공공 부문에서의 산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보고할 것	○ 공공부문 간담회 및 관련 대책 수립 - (공공기관 간담회) 부총리 주재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8.22), 장관 주재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11.4) - (대책 마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재경부, 9.1),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공공부문 포함하여 발표(관계부처 합동, 9.15)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최영은 연락처 044-202-8814

(17) 산재 과징금의 산재 예방 투자 환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 과징금을 산재 예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징수된 과징금을 산재예방 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서면 답변 제출 완료('25.11.7) ○ 과징금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명시하여 발의 -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지원 강화를 위해 사용 예정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4급 정은경 연락처 044-202-8808

(18) 산재 과징금의 적정 수준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과징금 규모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계획에 따른 과징금의 추징 규모 등의 추계하고 예측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것 ○ 과징금의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30억, 영업이익 5%로 설계된 과징금은 건설업계의 평균 이익률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보다는 사전에 안전보건 안내·지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것	○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의 영업이익 등 제출 완료('25.11.7) ○ 사망사고의 중대성 및 위반행위의 실질적 책임 정도에 비례하여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 계류 중* * 상임위 의결('26.2.12.) 및 법사위 의결('26.2.23.) → 본회의 계류 중 ○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마련 시 위반행위의 횟수 및 내용·정도, 기업규모, 사망자 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할 예정 ○ 과징금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명시하여 발의 -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지원 강화를 위해 사용 예정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4급 정은경 연락처 044-202-8808

(19) 잘못된 산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지난 정부 감사를 통해 산재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된바, 부정수급자로 공표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노무법인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감사 관련 부정수급 적발 규모 파악 과정에서 부정수급 예방금액(건수)이 포함되었음 - 예방금액 중 일부 부정수급 미인정 사례(의료기관의 휴업급여 적용 기간 착오 청구 등)가 확인되어 종결처리 하였음 -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를 오인하여 환수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겠음 - 향후 통계 작성 시에도 조사단계 또는 확정단계임을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음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최대훈 연락처 044-202-8835

(20) 안전규제 강화 보완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안전규제 강화가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및 지연, 일감 축소 등으로 건설현장의 고용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산재 예방과 일자리 안정 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안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것	<안전 예방 교육> ○ 실습, 토의 중심의 전문건설업 특화 교육(안전보건 아카데미) 등 건설업 맞춤식 안전보건교육을 개설,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5급 김민규 연락처 044-202-8820

(21)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범부처적 노력을 실시하고,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 관리 관련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지역교육청과 노동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특사경 파견 등 노동안전과 관련된 지도감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지도점검) 급식실 내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26년 100개소 점검 예정임 ○ (협력모델) 시·도교육청과 노동청간 핫라인(Hotline) 구축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을 검토 중임 담당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5급 김남균, 5급 진영훈 연락처 044-202-8871, 8872

(2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지원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 예방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릴 것	○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와 신청품목의 실거래가액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26년 사업공고 기 반영('25.12.31.) -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제보 및 자진신고 창구 운영 등 예방활동도 활성화하겠음 ○ '27년 예산 편성 시 지원단가를 현행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5급 김재규 연락처 044-202-8851

(23) 산재기금 지출예산 중 예방 관련 법정비율 상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행법상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재 예방에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문은 2010년도 법 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기금지출예산 중 예방 관련 법정비율 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산재예방사업 예산 규모 및 산재기금 지출 대비 산재예방사업 편성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 (예방사업 편성규모(억원)) ('22) 1조 2,552→ ('23) 1조 3,673→ ('24) 1조 4,587→ ('25) 1조 4,711 → ('26) 1조 7,051 ** (예방사업 편성비율(%)) ('22) 14.1→ ('23) 14.2→ ('24) 14.9→ ('25) 14.7→ ('26) 16.3 ○ 현행 법령 상으로도, 산재예방사업의 소요가 명확하고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충분한 예산 편성이 가능함 ○ 산재예방사업 예산 확대라는 취지 달성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26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50억으로 예방사업 지출의 0.24%에 불과 * 산재보험법 제95조제3항에 의한 정부 출연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박성진 연락처 044-202-8833

(24) 근로감독관의 산재 예방 관점에서의 운용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감독관 증원 인원을 산재 예방 관점에서 운용하는 등 산재 예방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보고할 것	○ 감독관 증원으로 실효적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 체계를 개편 운영 중('26년 감독계획) ①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 * '25년(계획) 2.4만 개소 → '26년 5만 개소 ②고위험 업종·규모를 선정하여 우선 예방 중심 감독 ③패트롤팀 운영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25) 산재 재판 승소율 지역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 재판 승소율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산재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원 도입을 검토할 것	○ 근본적으로 산재 불승인과 관련하여 소송이 과도하게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 분석*을 통해 소송제기 유형 및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산재 결정에 반영 추진 *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 분석 및 업무처리 기준 정비' 연구 ('25년 9월~12월, 한국노동연구원) - 법원이 업무 관련성에 대해 규범적 관점 등으로 판단하여 반복 패소하는 건에 대하여 항고를 포기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 및 시행('26.1월)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최대훈 연락처 044-202-8835 ○ 법무부-노동부 공동으로 '노동법원 설립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운영하며, 노동법원 설립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다각적 논의 중 - 전문가 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 사법부와 협의를 거쳐 노동법원 설립 관련 법 개정 등 추진 예정('27)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5급 권유리 연락처 044-202-7599

(26)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권에 대한 데이터나 지침 등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작업중지권이 현장에 잘 자리잡은 회사일수록 산재 예방에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권의 표준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작업중지권 운영의 우수사례 발굴, 실무자용 매뉴얼 등을 제작 추진 중 ○ 한편, 현행법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 노사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업중지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정대성 연락처 044-202-8929

(27) 산재 다발 업종 맞춤 교육체계 구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작업중지권은 관련 안전 교육이 선행되었을 때 효과가 있음에도 건설업, 조선업 등 산재 다발 업종에 대한 별도 법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므로 산재 다발 업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실습 훈련 방식으로 교육 방법을 바꾸고 교육 인프라 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산재 다발 업종 맞춤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재 다발업종 맞춤 안전교육 체계 구축 추진방안을 의원실 보고('25.10.) - 전문건설업체 대상 계층별(사업주, 실무자)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조선사와 협업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 추진 예정 담당부서 안전문화협력팀 담당자 5급 김민규 연락처 044-202-8820

(28) 재해정보 공개 등 산재알림시스템 구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 예방의 핵심 장치 중 하나는 재해정보 공개이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 관련 고용노동부는 상고를 하지 않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형 확정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기본정보는 공표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기업 공표제도를 개선하며,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재해조사의견서·재해조사보고서를 전부 공개하고, 사고와 무관하게 충실한 내용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산재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것	○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관련, 노동부 상고 포기로 판결 확정('25.11월) ○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6.6.1 시행)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계획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완료('26.2.19)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최영은 연락처 044-202-8952, 8814

(29) 백화점 · 면세점 폭탄 테러 위협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백화점·면세점 폭탄 테러 위협과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지도조치가 없고, 백화점·면세점 관련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이 그간 없었음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매뉴얼을 백화점·면세점이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실제 안전교육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백화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매뉴얼 작성·이행 및 점검 등 안내 추진 * (참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통해 다중이용업 등의 안전관리 규정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오상민 연락처 044-202-8805

(30)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도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한 산재보험법 관련, 2023년부터 최근까지 신고건수 10건, 인정건수 5건으로 그수치가 저조하므로 원인을 추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도록 한 '건강손상자녀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 반도체 산업 등 유해물질 노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음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임동훈 연락처 044-202-8847

(31) 위험성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처법 확정판결 22건 중 위험성평가 조항 위반이 86%에 달하는데, 판결문 분석 결과 신기술·신공정이 반영되지 않은 노후화된 제도, 노동자 참여 대상·절차의 불명확함 등의 이유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 업종별 평가 모델 최신화, 신공정, 신기술 반영, 근로자, 노동자 참여 절차의 구체화, 개선 이행 추적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현장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 참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 등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추진 중(~'26.6.)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5.2.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26.3.18.~'26.4.27.) ○ 신공정·신기술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모델 업데이트 추진 중(~'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5급 김두진 연락처 044-202-8923

(32) 사업주 처벌 수준의 법정형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한 편이므로 법정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시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 높은 집행유예 판결 비중 등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는 상황으로, 법정형 기준 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될 필요 ○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 노동부·법무부 합동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음('25.12월) -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신설을 결정('26.1월) '27. 4월까지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33)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시 제재 등 제도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인천공항 상가시설 중 SPC 계열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가 인프라에서 중대재해 처벌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국가 인프라 계약·입점 등에 있어 산재 반복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시 법적 제재 등 범부처 연계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행 규정 및 개선방안 검토 -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확대 과제 추진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오상민 연락처 044-202-8805

(34)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음 - 자율안전검사프로그램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5급 허효수 연락처 044-202-8853

(35) 동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설립 적극적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한 공공 추모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의 설치 필요성이 있고, 부울경의 경우 공원묘지 800기 조성이 필요한바 동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재희생자를 기리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며, - 동남권 산재희생자 추모장묘공원 건립 수요, 지자체 참여, 사업방식 등 적극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박성진 연락처 044-202-8833

(36)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보상 지급 기능이 확실하다는 점이 있으나, 사보험에서처럼 기업의 위험 극복 노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능이 약한 측면이 있는바, 산재보험의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경우 산재보험료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	○ 산재예방요율제가 내실 있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확대 및 개선 방안 연구('26.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5급 김두진 연락처 044-202-8923

(37) 쿠팡 청문회 논의사항 이행점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는 쿠팡이 2025년 1월 청문회에서 약속하였던 노동환경·안전개선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것 ○ 쿠팡 CLS가 청문회에서 분류작업 개선 등을 약속하였으나 과로사 지속 발생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각고의 조치를 취할 것	○ '26.1월 「쿠팡 노동·산안TF」를 구성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미이행 사항 적발시 신속히 이행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음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류석호, 강승훈 연락처 044-202-7574, 8914

(38) 장해급여 등 신청의 단순 대행 업무에 대한 법정수수료 제도 등 도입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장해급여 등 급여 신청의 단순 대행 업무로서 노무사의 전문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법정수수료를 설정하거나 과다 수수료 방지 가이드라인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노무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사의 수수료는 과거 공정경쟁 취지로 폐지된 바 있어(카르텔 일괄정비법, '99), 수수료를 직접 규제·개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한편, 대행 업무별로 난이도·복잡성·소요 시간 등이 개별 사건마다 다양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 과다수수료 문제는 노무사회에서 윤리교육 등을 통해 자정작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음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5급 김형준 연락처 044-202-7527

(39) 무안공항 참사에 대한 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무안공항 참사에서 기장, 부기장 등 근로자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의 위법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근로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항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및 사고 당시 조치의 적정성 판단은「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전문적 판단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를 필요 ㅇ 한편,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산재 및 점검·감독 이력 등을 고려, 감독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40) 중대재해 수사 지연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수사 기간 평균 376일, 기소까지 소요기간 평균 1.5년으로 중대재해 수사가 지연되는바, 장기 사건 대응팀 구성, 집중 처리 기간 시행, 수사 처리기간 인사평가 반영, 부당지연에 대한 감사,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형사법 교육 및 노동부 자체 역량 강화 등 수사 지연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	○ 중대재해 사건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중대재해 수사 인력·조직을 기존 234명, 13과 2팀에서 529명, 34과 1팀으로 확대하였음('25.12월) - 또한, 감독관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도 강화* * 신규 감독관 대상 2주 추가 교육 신설, 재직자 교육기간 확대(3일→5일) 등 - 노동부-검찰 수사협의체 정기 운영('25. 9월~), 경찰 대상 인력 파견(7명)·주요 수사 자료 상호 공유 등 유관 기관 협업도 적극 강화해나가겠음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4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 형평성 여부 등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약 4년이 되어 법 적용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중대재해 사고 시 입건 및 처벌 등이 형평성 있게 작동하는지와 공정한 집행 여부를 검토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경우 입건 여부·종결 여부 등은 노동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결정하고 있으며,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입건·종결 여부가 형평성 있게 결정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음 ○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추진, 노동부·법무부 합동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음('25.12월) -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신설을 결정('26.1월) '27. 4월까지 양형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42) 경주 노동자 질식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한 경주 노동자 질식사고는 안전보건조치, 교육 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였던 사고로 보이는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	○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25.12.1. 공포·시행) - 질식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및 사고 사례 전파, 교육 등을 통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5급 김남균 연락처 044-202-8871

(43) 재해 발생 시 처리매뉴얼 등 시스템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위험 화학물질 사업장인 포항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설비마다 관리·감독 주체가 달라 이로 인하여 사고에 즉각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황산사고 은폐 논란까지 발생하였는바, 재해 발생 시 처리매뉴얼 정비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재해 발생 시 재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현장출동하도록 초동 대응 체계 운영 중이며, - 초동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지침 등에 반영하였음 - 향후 재해 발생 시 혼선없이 신속히 대응하도록 초동 대응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온남이 연락처 044-202-8902

(44) 심야 배송 중단 요구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심야 배송 중단을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선택권과 이미 형성된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등 간의 거래 생태계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	○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에 택배 노·사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야간 택배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임 ○ 택배 노·사, 소비자·화주 단체 등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담당부서 노무제공자지원과,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담당자 5급 박정현, 5급 황도현 연락처 044-202-7760, 044-202-8979

(45) 위험의 외주화 방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위탁집배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쿠팡이나 실질적인 택배회사와 같은 원청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고,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하청의 재해 발생 건수가 원청에 최대 10배까지 높게 나오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나 위험성평가 지침 개정, 불법 파견 고용구조 해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 도급사업장의 실효적 안전보건 협의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실시('25.9월~12월) - 다만,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실시 및 노·사, 전문가, 현장 의견을 수렴(~'26.10월) 후 개선 방안 마련 예정 * 「사업장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규범 이행력 확보 방안」 ○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 개정(~'26.上),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 택배·물류업종에 대한 사내하도급 인력 활용·수요 실태 파악 및 파견 요소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노무 종합 컨설팅 실시('26년)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산재예방지원과,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4급 정은경, 5급 김두진, 5급 이용우 연락처 044-202-8808, 8923, 7575

(46) 공공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정책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체 중대재해의 10.7%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산업안전 알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거 정부에서 분기별로 시행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사고 사망 명단 공표제를 재추진하고, 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의 산재 예방 부분을 교부세와 연동시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를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할 것	○ (공공기관) 사고사망 현황 공개 추진 ○ (지방정부) 지방정부에서 수행·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점검 이행률 실적 등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진행 중 ○ (교육청) 시도교육청 관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고려하여 보통교부금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확정 교부('26.2)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최영은 연락처 044-202-8814

(47) 보건진단 명령의 실효성 확보와 산재조사표 제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보건진단 명령 위반에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낮고, 산재조사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안전보건진단명령(9.10.)을 통해 확인된 개선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12.3.)을 실시하여 개선 중 (~'26.5.29.) * 시설개선(국소배기장치), 작업환경개선 등 27건 ○ 또한 산재조사표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보완제출 ○ 향후, 보건진단 명령 및 산재조사표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모니터링하겠음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4급 윤현욱, 5급 강숭훈 연락처 044-202-8873, 8914

(48) 니토옵티칼에 대한 산재 역학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암 진단을 받은 니토옵티칼 전·현직 근로자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사안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니토옵티칼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실시를 검토할 것	○ '25.11.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집단역학조사 실시 심의 요청 - '25.12.5.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집단 역학조사 필요에 대한 재논의 결정 * 현재 집단의 규모와 정보로는 집단역학조사로 직업성 암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점, 개별 역학조사의 활용, 유사 업종 규모 및 취급화학물질의 실태 등을 고려 - '26.1.8.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기초자료 보완 요청 * 톨루엔 함유 주요 취급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26.2.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 및 회신(3.25.) ○ 향후, 주요 취급물질의 성분분석 결과 등 자료보완 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 예정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4급 윤현욱 연락처 044-202-8873

(49) 산업안전 혁신 지원법 제정과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 설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의 국산화, 표준화 인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립노동안전보건연구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하여 산업안전의 표준 인증 및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전담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으로 R&D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	○ 산업안전 R&D 관련 사업계획 및 전문조직 설립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 제출 완료('25.10.28) - 연구용역을 통해 타부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조직 개편(안) 마련 예정('26년~) 담당부서 산업안전정책과 담당자 5급 김건우 연락처 044-202-8815

(50) 산재 보상금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 보상금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근로자 및 유족들의 생활을 위한 근간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 보상금 액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임. 적정 산재 보상금에 대한 조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는 등 산재보상 제도를 개선할 것	○ 산재보험 외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는 적정 위자료(정신적 손해) 산정 가이드라인 등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산재근로자「적정위자료 산정 기준」 연구용역 추진('26.上~)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최대훈 연락처 044-202-8835

(5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업체 평가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허위 컨설팅이나 업체 평가 등급 허위 공시 등의 문제가 적발되고 있으므로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	○ 모든 컨설팅 업체별로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 - 컨설팅을 받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컨설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26년) * 모니터링 사업장별 각 2회(진행중·진행후) ○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위탁 사업의 수행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음 * ('27년 평가지표 반영) 정부사업 부실수행 통보된 경우 등 감점(최저 -100점)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5급 전연진, 조일한 연락처 044-202-8923, 8852

(52)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 특별진료가 가능한 특진기관 병원을 추가 지정하여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것	○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①근로복지공단병원, ②상급종합병원, ③종합병원에서 + ④병·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임(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26.上) * 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5급 신지원 연락처 044-202-8846

(53)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재보험 감면 기준 확대 등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재보험료 20% 감면 제도의 대상 업종 확대 및 산재보험료 할인 비율 상향 또는 할증 등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산재예방요율제의 산재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실시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확대 및 개선 방안 연구('26.4~) - 적용 업종 확대, 산재예방 감면 요율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 검토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5급 김두진 연락처 044-202-8923

(54) 건설공사 등의 안전 종합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인상이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발주자 책임 강화와 계상의무 주체 확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위반 시 엄격한 제재 조치 등 종합 대책을 세울 것	○ 현재 발주자에게만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를 도급인(원청)까지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6.上) * '26.2.25 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 ○ 지방노동관서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중이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 산안비 목적외 사용관련 '25년 하반기 총 127건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5급 백승현 연락처 044-202-8938

(55) 중대재해 발생 기업 병합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단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문화 미정착 등이 그 원인으로서, 이를 별도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 동일 기업 내 여러 사업장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경우, 수사전담팀 운영, 본부-지방관서 합동 수사회의 등을 통해 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예시) 다수 사망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대상 기획감독 실시('25.8.11.~10.31.)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온남이 연락처 044-202-8952, 8902

(56) 안전 디자인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확산성과 실효성이 동시에 제고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안전 디자인을 고안할 것	○ '26년 안전디자인 유형*을 확대(5종→13종)하고, 지원도 활성화하겠음 * '25년 표준모델 5종 → '26년 4유형 13종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협업 개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5급 김재규 연락처 044-202-8851

(57)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원인조사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공단의 재해원인조사 참여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의결·공포('26.2.19.)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58)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비공개 관행에 최근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최근 니토옵티칼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와 같이 실제 환경부가 공시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안전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보고되는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처리지침을 개정하였으며('25.12.10.), - 노동자의 알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산업보건정책과 담당자 5급 김남균 연락처 044-202-8871

(59)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시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휴일 운동장 개방 요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거절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학교 운동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시행할 것	○ 의원실과 협의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 소관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적사항 내용 및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 시달('25.12.8)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수사과 담당자 5급 이호준 연락처 044-202-8952

(60) 방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지침 강화와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방위산업체 SNT모티브 공장 내 총기 실험실에서 총기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총상을 입고 숨진 사례를 볼 때 방산업체는 군 관련 규정과 병행되는 특수성이 있고 이에 맞춘 별도의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감독체계가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이는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지침 강화와 개선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	○ 방위산업은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조치를 병행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방산업체(특히 총기)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가이드를 마련·배포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음 * 작업환경 및 공정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현장·전문가 등 의견수렴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5급 조일한 연락처 044-202-8852

(61) 퀵서비스배달업 재해방지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간제한 미션이 유발하는 과다 경쟁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아짐에도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배달 시간 제한을 금지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안전 가이드라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무함.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간제한 미션 등의 배달 중계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며 지침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	○ 금년 배달업체 점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위반사항 계도 예정 ○ 또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 정부와 배달 플랫폼사간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음 ○ 안전한 배달 일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담당자 5급 공세현 연락처 044-202-8898

【통합고용·청년고용 부문】

(1) 해외 취업 사기 관련 제도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취업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구인·구직 광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대형 구직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하며,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위법한 취업 포털 구인광고 등을 점검할 것 ○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취업 사기가 반복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 취업 알선 관리·검증을 위하여 취업 정보의 실시간 추적·감시·차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구인광고 모니터링팀 운영, 거짓 의심 구인광고 데이터 연계 및 검색 서비스 구축,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 사회초년생 대상 거짓구인광고 교육·홍보 등(한국직업정보협회 위탁) ○ 민간 연계 구인광고 피드백 시스템 구축 - 거짓 구인광고 단속 AI 점검시스템* 구축, 고용24 연계된 민간 포털 구인광고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개발** ○ 직업안정법 개정 완료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부과 - 노동부장관에 거짓 구인광고 수정, 게시 중시, 삭제 명령 근거 마련 -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 게재 의무 신설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결격사유 규정 적용 - 사업자협회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담당부서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5급 박찬영 연락처 044-202-7393

(2)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출신학교 서열을 매기는 등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관련 채용비리가 처벌규정 미비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된 사안과 관련하여 채용절차법 개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채용과정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기발의* -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음 * 강득구 의원 발의('25.9.9.)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5급 조은비 연락처 044-202-7436

(3) 불공정 채용 근절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불공정 채용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바, 노동조합원 자녀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등의 친족 등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기발의* -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음 * 조지연 의원 발의('25.10.15.) 등 5건 ○ 아울러 노동조합원 자녀 특혜채용 단체협약 등 사건 발생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면밀히 조사해나가겠음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5급 조은비 연락처 044-202-7436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담당자 4급 유현경 연락처 044-202-7609

(4) 심우정 전 검찰총장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 비리 관련 후속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국립 외교원 채용 비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은 있으나 외교법 위법 여부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면접 시 인사운영팀 미참여 등 매뉴얼 미준수, 내부 결재 문서 미비 등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된 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채용절차법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며, 문제시 채용 특혜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	○ 외교부·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개선 권고 이행 조치 현황을 확인('26.1.7. 이행완료) 하였으며, * '25.10.28. 김주영의원실 보고 완료 - 국가기관 대상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음 * 한정애 의원 발의('26.1.13.)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5급 김상진 연락처 044-202-7443

(5) 정년연장 정책 관련 제도개선 방향 모색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양극화된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청년 선호형 일자리인 세대 상생형 등으로 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차별화된 정년연장 대처 방안을 검토할 것	○ '정년연장 특위'에서 사회적 대화 진행 중, 정부도 논의 참여 - 향후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에서 노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예정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4급 구동영 연락처 044-202-7418
○ 정년연장 정책으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임금체계 조정까지 감안한 정년연장 정책을 마련할 것	○ '정년연장 특위'에서 사회적 대화 진행 중, 정부도 논의 참여 - 향후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에서 노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기업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정년연장이 세대 상생형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예정 ○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로드맵을 마련 ('26.6월 말)·추진할 계획이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촉진·지원 - 노사의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정보를 확대(100만명→200만명)·제공('28)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사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분석하고 임금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 예정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4급 구동영, 5급 김대원, 5급 이명진 연락처 044-202-7418, 7742, 7741

(6)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제도 확보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정년연장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기업 정규직 등 소수로 한정되어 중장년 고용 효과가 낮다는 한국은행 검토보고서 등을 볼 때 정년연장보다도 중장년 고용 지원이 시급한바,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확보할 것	○ 정부는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 훈련·일경험, 취업알선·장려금 등 재취업 지원까지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과 제도를 확보 중 - 특히, '25년에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50대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 (2,000명)를 신설하였고, - '26년에는 훈련·일경험 수료한 중장년이 제조업·운수 및 창고업 등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1,000명) 신설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중 - 아울러,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된 '중장년 고용네트워크'를 확대('25년 15개 → '26년 40개 내외)하여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지속 강화할 예정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담당자 5급 이주원, 양선재, 최선영 연락처 044-202-7461, 7514, 7460

(7) 5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 등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청년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대책은 쉬었음 청년을 장기 미취업 위험군으로 선별하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등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재 5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26년 사업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 담당부서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5급 임동훈 5급 이기범 연락처 044-202-7466 044-202-7441

(8) 임신 중 여성의 유·사산 휴가 규정 활용빈도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유산·사산한 여성의 유산·사산휴가 활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산 또는 사산시 유산·사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정책 홍보 등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것	○ 건강보험공단 연계를 통하여 임신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유산·사산 휴가제도 안내 중에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 ○ 한편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사업주의 업무공백 부담을 완화하였음 ○ 또한 사업장 지도감독,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제도 사용여건을 조성하겠음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5급 박해성 연락처 044-202-7471

(9) 워라밸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 사업 관련 조사 및 사업 확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워라밸 행복산단 모델개발 연구사업의 취지 등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확대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워라밸 행복산단 모델 사업과 같은 사업을 많은 산단에 실시할 것	○ '26년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 홍보, 상담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 중임 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5급 김상엽 연락처 044-202-7497

(10) 청년일자리 내역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청년일자리와 청년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을 고려하여 관련 내역사업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의원실 설명 완료('25.10.22)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5급 정승연 연락처 044-202-7417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훈련에 참여하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직업훈련의 내실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내실화 계획」 의원실 방문하여 기보고('25.10.28.) - 중복발달 장애인 대상 특별과정 확대 및 찾아가는 직업훈련 실시 - 발달장애 근로자 대상 직무·기초소양 훈련 등 재직자 자기주도 훈련 확대 - 장애인 AI훈련 과정 신규도입, 시각장애인 특성 고려한 훈련시설 설립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5급 박주윤 연락처 044-202-7485

(12) 중증 장애인 지원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들의 평균 임금이 40만원 정도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제공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 인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일반사업장으로의 전환('20년~), 출퇴근 비용('21년~) 등을 지원 중으로 - 전환에 성공한 직업재활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환성공지원금('26년~)을 신설하는 등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자리 전환지원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5급 우상희 연락처 044-202-7576

(13)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 복원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예산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할 것	○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발표 ('25.12.24) 및 예산을 복원*하였음 * '25년 284억 → '26년 1,180억(+315%) -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간담회 등 개최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적극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임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5급 윤문규 연락처 044-202-7420

중앙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 조사관 증원 및 업무환경 개선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 분쟁의 최근 증가로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휴직률이 11.9%일 정도로 조사관들의 노동 실태가 열악한바 조사관 증원과 활동비 수당 인상 등 조사관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노동 분쟁 증가에 따른 조사관 증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증액, 외국인 근로자 권리구제 신청사건 통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검토하고 추가 소요 예산과 인력 증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 (조사관 증원)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를 위해 '25.12.30. 조사관 50명을 증원하였고, 이와 별개로 심판사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조사관 증원 등을 요구 중 ○ (활동비 증액) '24년 조사관 활동비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비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왔으며, - '27년에도 본예산 편성 시 조사관 활동비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권리구제대리인 수당) '27년 본예산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 물량확대 및 보수단가 증액 등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 (외국인노동자 통계) 외국인 노동자 사건의 체계적인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전산 개편('26년 상반기) 및 부당해고 등 서식 개정('26년 하반기) 추진 중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심판1과 담당자 5급 김달호, , 5급 구진회, 5급 조동석 연락처 044-202-8367, 044-202-8363, 044-202-8325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제신청제도 신설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시스템 하에서 피해자의 대다수는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극소수만이 진정 건에 대하여 법 위반 판단을 받는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괴롭힘 판단, 가해행위자 징계를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것	○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함 - 다만, 60일 이상 소요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소지가 있으며, - 노사 분쟁해결 기구인 중앙노동위회에서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기관의 성격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담당부서 심판1과 담당자 4급 이창기 연락처 044-202-8341

(3)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지급 지연 해결 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국선노무사) 제도와 관련하여 수당 지급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지연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정 예산 확보 방안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권리구제대리인 보수 집행 추이, 선임건수 등을 상시 확인하여 부족 예산의 조기 전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보수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음 ○ 한편, '27년 본예산 편성 시 선임건수를 반영한 물량 확대 및 보수단가 증액 등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적정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음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심판1과 담당자 5급 구진회, 5급 조동석 연락처 044-202-8363, 044-202-8325

(4)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수당 증액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이고, 회의 참석비에서 교통비를 제하면 더욱 적은 금액인바 수당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예산 편성 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단가 인상 및 사건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액 노력 지속 담당부서 심판1과 담당자 5급 조동석 연락처 044-202-8325

(5) K-ADR 스쿨 강의료 기준, 강사 위촉기준, 성과평가 점검 및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앙노동위원회 현직 위원장이 K-ADR 스쿨 강의료로 1,378만원을 수령하는 등 ADR 사업의 발주 과정, 위탁 절차 및 강사 위촉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DR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검증하여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을 개선할 것	○ ADR 교육과정 폐지 - ADR 교육 관련 예산은 세목내역명을 “분쟁조정 실무역량 강화”로 변경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비용으로 활용 ○ 고용노동부 특정감사(’25.11.5.~12.17.)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26.1.29.) - (교육 위탁운영) 노동위원회에서 별도 교육을 신설·위탁 운영 시 감독기관 지위에 해당하는 중노위 소속 고위 공직자인 위원장은 출강이 필요한 경우 무료 출강을 원칙으로 운영 - (용역계약 절차) 용역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 시 「고용노동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 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척할 계획 - (평가) 용역사업 입찰 제안서 평가 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하고 기술평가 점수 산출 및 평가결과 임의 조정 금지 담당부서 조정과 담당자 5급 김봉영 연락처 044-202-8304

(6)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감독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이 심판 판정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잘못 발송하였던 사안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기관평가 지표에 조정 노력 점수가 추가됨에 따라 이미 노사자율로 교섭이 타결된 사업장에까지 조사관이 사후조정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사안 등이 있었는바,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제도개선할 것	○ 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 전산망을 개편하였고(6~8월), 사건 판정결과 알림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함(8월) <주요 내용> ○ 판정결과 SMS 발송예약 시 **반드시 확인자의 검토**를 받도록 **전산시스템** 및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 ○ 조사관이 판정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판정결과 SMS 문구(안)가 **전산상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개편 ○ 사후조정 서비스 실효성 강화 설문을 실시('25.11.12.~11.19.)하고 사후조정 서비스 관리·운영 방안 마련하여 국회 박홍배 의원실 보고('26.1.26.) ○ 사후조정 서비스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 및 지노위 통보('26.1.29.) - 사후조정은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공 - 사후조정 권고 시에는 법적 근거 및 절차에 따라 노사 당사자의 자발성과 실질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형식적이고 과도한 권고는 지양 ○ '26년 기관평가 지표 변경 - ('25년) "사후조정 신청 건수" 평가항목 삭제 ('26년) "우수조정사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사후조정 사례 가점 부여' 형태로 변경('26.3.16.) 담당부서 조정과, 심판1과 담당자 5급 김봉영, 5급 조동석 연락처 044-202-8304, 044-202-8325

(7) 긴급이행명령 제도 활성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주무기관임에도 긴급이행명령 신청 실적이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으므로, 필수적으로 긴급이행명령을 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처리 단계별 제도 안내) 종전에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규정 외에 별도 안내가 없었고, 신청 서식도 부재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개선('26.1월 시행) - ①부노·공정 재심사건 판정서 송부 시 처리결과 알림 공문에 긴급이행명령 제도 안내, ②사용자의 불복으로 행정소송 제기될 경우, 소송제기 사실 알림 시 긴급이행명령제도 안내 ○ (노사마루 행정 연계기안 반영) 처리결과 알림 공문 및 행정소송 제기 알림시 안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망에 연계기안문 개선('26.1월 시행) - 부노·공정 재심 구제신청 최종값이 '인용'일 경우 안내문구 자동 표출 ○ (홈페이지 안내)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도 소개('26.1월 시행) - [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긴급이행명령] 탭에 제도 소개 내용 탑재 ○ (서식 구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양식을 마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서식으로 규정('26년 규칙개정시 반영) 담당부서 교섭대표결정과 담당자 5급 박재형 연락처 044-202-8242

(8)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AI 도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동위원회 조사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초적인 조사, 법률 검토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동위원회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5.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 AI를 활용하여 문서 검색, 음성·이미지 자료 분석, 조사보고서 초안 생성하는 기능 등을 구현할 예정('26.6월)임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4급 하병수 연락처 044-202-8355

(9)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상 격상 및 독립성 강화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폭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교섭단위 결정 등 중앙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매우 큼에도 그에 걸맞은 위상과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고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조직 체계와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함 ○ 그간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2년부터 중노위 자체 전입인력풀을 구성·운영하는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 앞으로도 노동위원회 기능의 유지·강화에 필요한 인력·조직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음 ○ 한편,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있으며, - 노동조합법 개정 등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바, 이에 맞게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담당자 5급 김달호, 5급 정재훈 연락처 044-202-8367, 044-202-7864

(10) 외국인 노동자 권리침해 사건 통계 관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권리침해 사건 통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외국인 표시란을 추가하고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 신청 건수나 유형을 종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통계를 관리하고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포함시킬 것	○「노동위원회규칙」 개정 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서식에 외국인 표기 반영 예정(~2026년) - 2026년도 통계연보부터 외국인 사건 관련 통계 반영 예정 담당부서 심판1과 담당자 5급 조동석 연락처 044-202-8325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접근성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법 관련 설명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 안내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불편과 직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하고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25.11.)하였으며, -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신청 사건의 유형에 따라 신청 취지가 자동 작성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함 ○ 민원인 접근성과 조사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동위원회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신청 매뉴얼 및 안내 영상 배포 예정('26.7월)임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4급 하병수, 5급 김달호 연락처 044-202-8355, 044-202-8367

(12)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ADR을 강조하면서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직권조사는 평가지표상 배점이 삭감되었는데 노동부 감사 결과 ADR 솔루션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ADR에 치중하기보다 직권조사 기능, 심판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위원회 내 노동자판단위원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분쟁조정 기능,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능 등 향후 강화가 요구되는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주력할 것	○ 심판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심판과 조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기관평가 배점 확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직권조사 활성화를 통해 심판 기능을 강화 * ('25년) 10점 → ('26년) 15점 -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해 조정사건 처리 실무가이드(자체, 3월) 및 교섭절차 매뉴얼(공동, 2월) 등을 마련하고, 위원·조사관의 사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권역별 현장 교육*, 워크숍 등 진행 * (3.10.) 중노위, 충청권역, (3.11.) 경상권역, (3.12.) 전라권역, (3.13.) 서울권역, (3.20.) 제주권역 -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제정 시, 신속·공정한 분쟁조정 역할 수행 예정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의원 대표발의('25.12월, '26.1월)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5급 김달호 연락처 044-202-8367

(13) 개정 노조법 제2 · 3조 시행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개정 노조법 제2·3조 시행에 대비하여 사용자 범위, 교섭의 절차, 쟁의의 범위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을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여 매뉴얼을 작성할 것	○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26.3.10.) 됨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와의 교섭이 가능해졌고, 이에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절차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상급단체, 현장실무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마련('26.2월) ○ 그 외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등 관련,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 등의 적용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조 담당부서 교섭대표결정과 담당자 5급 박재형 연락처 044-202-8242

(14) KBS 부당해고 관련 엄중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KBS 청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음에도 KBS는 복직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하도록 할 것	○ 이행강제금 2차까지 부과 완료*하였으며,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25.12.12. 19,125,000원 부과 ** 구제명령 미이행시 '26.6월에 3차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담당부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7급 황종국 연락처 043-299-1270

최저임금위원회

(1) 독립적인 심의기관 마련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노사 의견 대립시 실질적인 결정권을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향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지속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6급 신예원 연락처 044-202-840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 심 사 위 원 회

(1) 재심사 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재심사청구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인력 규모에 변화가 없어 운영규칙상 재심사 처리기간인 60일을 준수하는 비율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재심사 회의 한 건당 시간이 짧아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세종시에서만 구술심리가 진행되어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분원 설치 및 영상진술 제도 도입 등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업무 효율화 추진) 기능업무와 재심사 처리 팀별 전담 수행, 사건 추가배정으로 처리 기간 단축 노력 - 사건처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 업무재편('25.8월~) -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및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유형별 전담팀* 구성('26.2월~) * 난청팀, 장해팀, 진폐·뇌심팀, 요양팀 ○ (영상 구술제도 도입) 부상·질병,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원거리 출석이 어려운 청구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영상 구술제도 도입('26.1월~) - 영상구술 참석대상 확정, 구술신청서 양식변경, 심사관 대상 영상통화 방법 교육, 심리회의실 내 관련 장비 비치 등 ○ (소위원회 개최 활성화) 심도 높은 심리를 위해 위원장 지정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운영('26.3월~) - 법률쟁점 사건, 특정 상병 사건 등 소위원회 통해 1차 심리 후 심리회의 안건 상정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6급 권유정 연락처 044-202-8441

(2) 산업재해 재심 승인율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 승인율이 2020년 9.29%에서 2025년 8월 5.42%로 현저히 낮아졌고 불복소송에서의 승인율 20.9%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아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심 승인율을 높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심사위원회 인원구성 변경도 검토할 것	○ (균형있는 심리회의 구성) 심리회의 개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법조계·노사관계분야와 의료계 위원을 각각 균형있게 참여*시켜 충실한 사건검토 및 심도있는 논의 진행 * 법조계 1~2명, 노사관계전문가 1~2명, 의료계 2~4명 ○ (임기 만료 비상임위원 위촉 절차 진행) 후보자*추천 완료 * 정부추천 52명, 사용자 추천 18명, 근로자 추천 18명, 총 88명 - 법조계·노사관계 분야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적극 활용하고, 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의 심사역량 강화 노력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6급 권유정 연락처 044-202-844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 공익위원 및 근로자위원 비율 변경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이 60%를 차지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절한지, 근로자위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할 것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매 회의 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 구성, 이 중 노·사대표 위원 각 1명을 포함 운영 중으로 - 행정청 내지 청구인(노·사)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결을 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에 노력할 것임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의 '25년 행정처분 취소율은 17.0%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0% 보다 8%p를 상회하는 등 권리구제에 노력 * '26. 3. 18. 위원 (재)위촉 되었으며, 임기는 3년임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담당자 5급 김선영, 7급 오미선 연락처 044-202-7912, 79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윈저글로벌 단체협약 위반 사안 재검토 및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윈저글로벌 희망퇴직 특별위로금 지급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는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하였으나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및 윈저글로벌 종전의 관행에 따르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임. 이 사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윈저글로벌이 노동조합에 공문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할 것	□ 특별위로금 미지급 관련 단체협약 위반 진정 관련 ○ (배경) 사측은 '24년 희망퇴직 당시 단체협약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특별위로금을 산정하여 지급 - 이에 대해 특별위로금은 단체협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 위반이 아닌 것으로 종결 처리 ○ 직권 재조사 ('25.8. ~ '25.12.) - 특별위로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 위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 노조법 제92조제2호가목 - 근로기준법상 금품 체불(제36조)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 진행한바 - 특별위로금은 그간 "노사관행"으로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어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판단하여 범죄인지(25.12.30.) 後 강제 수사 ○ 강제수사(압수수색) 실시 ('26.2.26.) - 사측은 '22년 법인 분사 以前 자료가 없어 관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하여 - 압수수색영장을 발부·집행했으나, 과거 자료 확보 못 함 - 사측 협조하에 데이터 서버를 직접 확인(현장 실사)한 결과,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최종 확인 ○ 검찰과 추가 수사 방향을 긴밀히 논의 中 □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 '25.11.17. 근로감독 착수 → '26.3.3. 노조가 주장한 7건 부당노동행위 中, 3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입건 조치 →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예정

(2) 필립모리스 진정 관련 근로감독관 적극적 행정 이행 방안 및 공직기강 확립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①필립모리스 진정 4건 중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수사가 미진하였고,② 온열질환 산업재해 고발 사안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검토하였으며, ③의원실 자료요구 이후 필립모리스를 대리하는 로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과 소통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는바, ○ 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이 노동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정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확립 조치를 마련할 것	○ 필립모리스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적용하여 조사하도록 노력하였고, - 온열질환 산업재해 고발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진행중으로, 당사자 조사 및 제출자료 검토를 통해 조치 예정 ○ 요구자료 관련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업무담당자들에게 전파 및 교육하였으며, - 부서장 주관하에 교육 실시(공직자의 자세, 수사 전문성 등) 및 모니터링(업무 수행 태도, 민원 응대 적절성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상시 복무점검 체계를 가동·강화하겠음 담당부서 서울남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박재영 연락처 02-2639-2252

(3) 콜센터 교육생 처우 근로감독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콜센터 아웃소싱 용역 업체들에서 교육생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진정이 접수되었으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검토할 것	○ 국감이후 '25.10.31.부터 '26.1.12.까지 (주)씨브이파트너스 <콜센터 서비스업, 금천구 소재, 473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음 *** (감독결과) 교육생 임금, 퇴직금 과소지급분(1억5천만원) 시정완료** 담당부서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6급 임채민 연락처 02-2250-5866

(4) 한국공항공사 쟁의행위 적극 대응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국공항공사 인건비 낙찰률 제도와 관련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서울남부지청은 자회사 노·사 간 합리적 대화 및 모·자회사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25.10월~12월, 12차례), '25.12.29. 자회사 노사는 <'25년 임단협>을 체결 담당부서 서울남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7급 이승주 연락처 02-2639-22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 및 고용 문제 조사 및 보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조혈기계암이 추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고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 은폐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조사하고, 해외소재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에게 고용승계와 백혈병 산재 발생 대응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촉구하여 조사내용 및 자료, 한국니토옵티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 보건관리 실태조사('25.6.25.~8.14.)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중('26.5.29.한) -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에 따른 개선 조치 * 시설개선(국소배기장치), 작업환경개선 등 27건 - 직업성 암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검토 중 * 주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추가 검토 ○ 산재은폐 및 미보고,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여부 조사 후 후속조치 실시 ('25.12.10.~12.16.) - '22년 하반기 1개 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누락 확인(과태료 460만원 부과) ○ 보건관리 실태조사 후속조치 철저 확인 예정 담당부서 평택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6급 오종일 연락처 031-646-1188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암 발생이 빈발하므로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마련하고 고용승계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산업안전보건감독 관련> ○ 보건관리 실태조사('25.6.25.~8.14.)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중('26.5.29.한) -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에 따른 개선 조치 ○ 추후 개선조치가 미흡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독 실시 예정 담당부서 평택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6급 오종일 연락처 031-646-1188 <고용승계 관련> ○ 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도록 대화 성사 등을 위한 노력 지속 중 - 평택지청장 니토옵티칼 임원 면담 2회('25.11.26., '26.1.16.) - 경기청장·평택지청장 니토옵티칼 대표 면담('26.2.10.) 등 대화노력 경주 당부 ○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주선 노력 등 지속 예정 담당부서 평택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박선준 연락처 031-646-1199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을 중간 착취하는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5년 7월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도합 약 1.8억원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제기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수사중으로, 대규모 중간착취 문제로 보임. 진정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양구군 계절노동자를 전수조사하고 수사를 확대할 것	○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여 브로커 등 5명을 형사 입건하고 중간착취에 대해 수사 중임 - '23년, '24년 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937명에게 수수료를 중간착취한 혐의로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수사지휘 건의('26.4.6.) → 검사 수사지휘 의견에 따라 송치할 계획 ○ 또한, 임금 체불 집단 진정을 제기한 양구군 계절노동자에게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지원 * 근로자 89명 1.7억원 임금 체불 - 피진정인인 농민들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 성립 관련하여 내사지휘 건의('26.4.3.) → 검사 지휘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할 계획 담당부서 강원지청 노동기준조사과 담당자 6급 김재왕, 6급 전혜령 연락처 033-269-3592, 033-269-3554

(3) 신화다이나믹스 불법파견 및 노사대립 문제 대응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신화다이나믹스에서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보이고 노사대립 상황도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적극 대응할 것	<불법파견 관련> ○ 고발사건 수사 완료 후 대표이사 파견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26.1.28.) - 검찰 처분(공소 제기) 후 파견노동자 3명에 대해 직접고용지시 및 이행 지도 예정 <노사지도 관련> ○ (최근 교섭 상황) '26년도 임단협 상견례('26.3.16.) 및 1차 교섭(3.30.) * '26.4.6 노조, 근로감독청원서 제출하여 청원감독 검토 중 ○ (노사면담) 대표자 면담 및 노조 면담, 사측 담당 면담(각 1회 이상) 통하여 성실교섭 지도 계속('26.2~3월) - 노사 간 지속적 대화를 통해 원만한 교섭 타결 지도 예정 담당부서 안산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박영한 연락처 031-412-1935

(4)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과로사 관련 재해사망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동두천시에서 인력충원을 하지 않아 환경미화원이 과로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정확한 재해사망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재해사망 조사 관련> ○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를 수사결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내사종결 처리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담당자 6급 양지현 연락처 031-850-7787 <근로감독 관련> ○ 장시간 근로가 직접적 사망원인이 아니므로, 특별감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시감독('25.11.3.~11.4.) 실시 - 감독 결과, 공무직(환경미화원 포함)의 장시간근로 위반은 없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일부(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1명) 주 52시간 초과근로 확인 - 또한, 통상임금 미산입에 따른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등(체불금품 합계 17,564,810원, 52명) 확인된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 * '26.3.23. 시정완료 후 종결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6급 신승현 연락처 031-850-7609

(5) 채권문제로 인한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원청인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인 한덕엔지니어링의 가압류 문제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원청이 기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노동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할 지청인 안양지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25.10.16. 안양지청장, 원·하청사 및 노조 면담, 고용승계·체불임금 청산 등 지도 - 신규하청, 입사지원자 73명 전원 채용 - 임금체불 하청노동자 93명 전원 권리구제(대지급금 지급) 담당부서 안양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양은영 연락처 031-463-7338

(6)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 근로 환경 특별근로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가 근무하는 T1 수하물터미널은 4층 구조로 된 수하물 처리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안전대가 없고, 근로자들이 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생명과 안전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대책을 강구할 것	○ 인천국제공항공사 수하물 운영 관련 기획감독 실시 중('25.11.10.~) - 당초 계획 감독 범위를 수하물 운영 구간으로 하였으나, 노동자 대표 등 요청으로 여러 차례 추가 확인 중 * '26.3.3. 등화사업소, 기계사업소 3.13. 전력토목 사업소, 4.3. 건축 에어사이드 확인 하였음 - 작업환경측정기관 협조로 유해물질 측정('25.12.22. 18:00~24:00) 담당부서 중부청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5급 이승섭, 7급 정광순 연락처 032-460-4410, 032-460-624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폭력사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대응이 지연되었는바 폭력 사태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 지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현대자동차(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중 * 폭력사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및 이수기업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 ’26.2.13. 근로감독 착수 - ’26.2.23. 자료제출 요구<이수기업 퇴직 노동자 제기 판결문 일체> - ’26.2.26. 자료제출 2차요구<판결문> - ’26.3.16. 근로감독 기간 연장<2개월 연장, ~5.15.> - ’26.3.16. 자료제출 요구<이수기업 이전 업체의 계쟁기간에 대한 판결문 일체> - ’26.4.6. 이수기업 수행 업무 현장 확인 ○ **(추진계획)** 이수기업 소속 노동자 및 현대자동차(주)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위반 여부 검토 담당부서 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6급 유도경 연락처 052-228-1814

(2) 한화그룹 차원 부당노동행위 적극적 수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노조 선거 개입뿐 아니라 과거 2015년 삼성 테크윈 인수 당시 금속노조 탈퇴 종용, 삼성탈레스 근로자위원회 특혜를 종합하여 보면 개별 사업장 차원이 아닌 한화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므로, 관할지청 뿐 아니라 부산청 등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	○ 노조에서 제기한 고발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실시 등 엄정하게 수사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음 - 수사 과정에서 한화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음 ※참고: 노동조합, 해당 고발사건 취하('26.2.6.) 담당부서 부산청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6급 박태진 연락처 051-850-6384

(3) 삼성SDI 사업장 근로감독 및 노동자측 의견 청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삼성SDI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근로감독이 있었으나 노동자측 면담 없이 근로감독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근로감독 시 노동자측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위험상황신고, 점검 등에서 노동자 및 관계자 면담을 기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하여 시정·지도하였음 ○ 앞으로도 사업장 근로감독 시 다양한 노동자 의견이 감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음 담당부서 울산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7급 김시현 연락처 052-228-189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 최저임금 위반 합동조사 및 계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대구가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 전국 1위이며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바 최저임금 위반 합동조사와 계도를 실시할 것	○ 지역 대책 간담회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행정 대응방안 공유 * '25.11.18. 2025 노동 권익대변 청소년 발굴 간담회, '25.11.20. 청년 노동 토크 콘서트 등 참석 ○ 기업·협회 관계자 면담 및 간담회 등 유관기관 소통을 통한 최저임금 준수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홍보 강화 * '26.2월 편의점 관계자 면담(5회), '26.3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3개 지회 관계자 등 간담회, '26.4월 대구시 관계자 간담회 등 ○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 담당부서 노동기준조사2과 담당자 7급 임익기 연락처 053-667-6256

(2)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 부당노동행위 수사 신속 처리 및 산업안전 관련 사고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포항 에너지머티리얼즈 사업장에서 교섭 불참, 노동조합 활동시간 부여 거부, 직장폐쇄 등 부당노동행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는바 고소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고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소사건 처리 경과 및 노사 대립 상황 등에 대해 박홍배 의원실로 방문 보고함('25.11.20.) - 노조에서 접수한 고소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송치 완료('25.12.10.) ○ 단체교섭 관련 노사간 의견 대립, 사업장 가동 지연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으나, 주기적인 노사면담 등 성실교섭을 계속 지도 담당부서 포항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조재현 연락처 054-271-6753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수사 지휘를 통하여 '25. 12.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 (불기소 이유)①위험성평가 근로자 미참여는 처벌조항 없음(각하), ②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혐의없음), ③작업환경측정 미실시(과태료부과) ○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 확인(필요시 현장 즉시 확인) 및 중방센터 등과 긴급연락체계 마련을 통한 상시 소통 담당부서 포항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7급 권민혁 연락처 054-271-683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 한국전력 불법파견 사건 신속 처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한국전력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2020년 시작되어 1심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노동청에서 불법파견범죄를 인지해 수사하지 않았고, 2024년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범죄를 진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입건되지 않았으며 시정지시, 특별근로감독 등도 없었는바, 한전KPS 사안과 같이 근로감독, 입건, 수사 전환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할 것	○ 파견법 위반 진정 사건 조사 결과, -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한전에 직접고용(177명) 시정지시('26.2.11.) - 한전 및 노조(도서전력지부)의 시정기한 연장요청(사유: 근무지역 파악 및 배치 등)에 따라 시정기한 연장(~'26.4.20.) * '26.4.20. 근로계약 체결 예정이며, 177명 중 정년퇴직자(5명), 입사포기자(4명)을 제외한 168명 전원 직접고용 예정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6급 박규현 연락처 062-975-6302

(2)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노동행위 엄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수차례 지도 행위와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노동행위 4회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바 노사 자율 교섭 중시 입장을 버리고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할 것	○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에 일부기소 의견으로 송치('25.11.3.) - 검찰 보완수사 지휘('25.11.5.)에 따라 추가 수사 중이며, 조속히 송치 예정('26.5월) ○ 추가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하고, -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음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6급 박규현 연락처 062-975-6302

(3) 군산농협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감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군산농협에서 임금체불, 성과급 및 학자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노동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바 특별근로감독 및 기획감독을 검토할 것	○광주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협의중이며, 2026년 수시감독 대상 등에 포함하여 감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군산지청 노동기준조사과 담당자 6급 정희성 연락처 063-450-0520

(4) 제주 노인생활지원사 전자감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재조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주시 노인생활지원사에 대한 어플 위치추적을 이용한 전자감시에서 위치추적 오차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용자 면담, 경위서 작성이 강요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으나, 조사 결과 정당한 복무관리로 판단하고 행정종결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조사할 것	○ 행위자인 대표자가 생활지원사들에게 행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조사 실시 재조사 결과, 행위자인 대표자의 행위가 '다른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치함 담당부서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담당자 6급 강신욱 연락처 064-728-71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현대제철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재수사 철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2021년부터 시작된 현대제철 교섭 거부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음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방치하고 불기소처분하였음. 계속 진행중인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재고소하였는바 다시 입건하고 철저하게 재수사하며, 교섭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 (고소 사건 진행 경과) '25. 8. 27.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고소 요지) 노동조합의 '24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현대제철이 응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임 - '25. 8. 29. 대검찰청, 서산지검에 고소장 이송 - '25. 9. 3. 서산지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수사지휘 - '25. 10. 30. 천안지청, 서산지검에 수사기간 연장지휘건의* * (연장지휘건의사유) 두차례 고소인 출석요구 하였으나 고소인측 변호사가 조사 기일 변경 요청과 의견서 제출 의사 표명 - 천안지청, 참고인 조사 후 고소인측은 의견서 제출 예정이었으나, '26. 4. 9. 현재 의견서 미제출 → 현재 수사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외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원하청 교섭에 노사 중재 역할에 노력하겠음 ※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노사 지도 경과 ① ('26. 3. 16.) 천안지청장,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원하청 성실 교섭을 지도 ② ('26. 3. 31.) 감독관, 비정규직지회에 방문하여 지회장 면담 진행 ③ ('26. 4월 중) '대전청(청장) - 원청 – 비정규직지회' 간 3자 간담회 추진 예정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최병희 연락처 041-560-2886

(2) 현대제철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 처리와 직접고용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대제철 사의 불법파견에 대하여 2018년 근로감독청원이 있었음에도 시정지시가 2021년, 기소가 2024년에야 되었으며, 민사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을 다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2016년 시작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아 6차에 걸쳐 2,000명 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불법파견범죄의 피해자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	○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 사측 면담 등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직접고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속 면담 및 지도하겠음 ※ **(사측입장)** 법원의 판단이 유동적인 상황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철강업의 시황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여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시 이행 어려움 **※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 관련 지도 경과** ① **('26. 3. 16.)** 천안지청장, 현대제철을 방문하여 원하청 성실 교섭을 지도 ② **('26. 3. 31.)** 감독관, 비정규직지회에 방문하여 지회장 면담 진행 ③ **('26. 4월 중)** '대전청(청장) - 원청 – 비정규직지회' 간 3자 간담회 추진 예정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담당자 6급 정권일, 6급 최병희 연락처 041-560-2888, 041-560-2839

(3) KBS 부당해고 관련 엄중 조치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KBS 청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었음에도 KBS는 복직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감독 등 강하게 조치할 것	○ KBS 청주방송총국 감독 관련 - 2026.2.12.부터 KBS청주방송국을 대상으로 수시감독* 착수 * `25.9.26.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 3개 단체가 KBS청주방송국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청원 제기(`25.9.) → 청원 심의를 통해 감독 필요성 인정되어 청원 수리(`26.1.) - 청원요지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이므로, 재직 중인 프리랜서 전체(40여명) 대상*으로 개별 면담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 여부 조사 중 * 방송작가, VJ, 리포터, FD 등 다수 직종의 프리랜서가 있고 업무 내용 및 방법이 달라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면밀한 조사 필요 - 프리랜서 조사 결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등 시정 지도 예정 담당부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6급 김지은 연락처 043-299-1255

근 로 복 지 공 단

(1) 산재 장해급여 신청 절차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치료 병원 폐업·의사 이직 등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장에서 업무지침상 가능한 대체 서류 인정이 되지 않고 공단병원 이용에 대한 안내도 미흡해 산재 노동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장해진단서 외 인정 서류 명확화, 공단병원 안내 의무화, 공단병원 발급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것	○ 산재근로자가 원활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해진단 시스템 개선 완료('25.12.12.) - 의료기관 장해상태가 확인 되는 경우, 일반 소견서 예외적 '인정' - 휴·폐업 등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특별진찰을 통해 장해 진단 지원 -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단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프로세스 마련 및 전파 담당부서 보험급여지급부 담당자 김영희 부장 연락처 052-704-7421

(2) 퇴직급여 충당금 미적립 문제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단의 퇴직금 부채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업 부문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퇴직금 미적립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퇴직금 적립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 (**추진계획**) 매년 퇴직급여 충당금 **150억 이상** 설정·적립하여 안정적 퇴직금 지급 기반 마련 ※ 기본 150억 + 경영손익 흑자 시 흑자액의 20% 추가 적립 ※ 분기별 적정액 적립하고 퇴직자 발생 시 적립된 충당금에서 지급 [**적립금 확보방안**] ▲ (**자체수입 증대**) 전문재활특성화, 진료협력 강화,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화 추진 ▲ (**출연예산 확보**) 산재병원 공익적 역할에 따른 적자운영 및 재정지원 필요성 등 정부 대상 적극협의 통해 출연예산 확보 추진 담당부서 의료계획부, 노사협력부 담당자 최재혁 부장, 김성실 부장 연락처 052-704-7501, 052-704-7061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운용체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이 운용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이 단기간에 1조 원 이상으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비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전담부서 신설, 운용 전문인력 확충, 예산 지원 확대 등 기금운용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입 대상 확대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조직·인력 확대방안 마련, 추진하겠음 - 관련부처 협의 후 조직·인력에 대해 증원(수시) 요청 ○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퇴직연금계획부 담당자 김완석 부장 연락처 052-704-7361
○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금 운영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확충할 것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종합 홍보계획 수립·시행 중 -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외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계정 확대에 따른 대국민 홍보 주력 담당부서 푸른씨앗확산TF 담당자 김상엽 부장 연락처 052-704-7340

(4)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 직업복귀 지원체계 개선 필요

<table>
<tr><th>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th></tr>
<tr><td>○ 산재 트라우마 노동자의 장기 요양과 낮은 직업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직장적응훈련 등 지원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바, 요양 이후까지 연계되는 심리치료·직업복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d>○ (~’25년) 요양종결 단계에서 직업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복귀지원 서비스 제공

○ (’26년~) ‘직업복귀 토탈케어’사업으로 확대개편, 요양초기부터 전문재활치료 · 심리상담 연계, 직업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토탈 서비스 제공
- 기존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과 달리 요양초기부터 요양종결 후 직업복귀 이후까지 심리안정 단계별 지원 등 연속성 있는 맞춤 서비스 지원

- 직업복귀 및 사후관리 지원 개편 전후 비교 -
<table><tr><th>구 분</th><th>직업복귀 및 사후관리지원
(기존, ~’25)</th><th>직업복귀 토탈케어
(개편, ’26~)</th></tr><tr><td>개입 시기</td><td>요양 종결 후</td><td>요양 초기부터 요양 종결 후 직업복귀 이후까지</td></tr><tr><td>지원 대상</td><td>요양종결자 중 직업복귀 희망자</td><td>장해예상 산재근로자</td></tr><tr><td>지원 내용</td><td>직업복귀 지원</td><td>요양·보상·심리·재활서비스 및 원·타직 직업복귀 서비스 지원</td></tr></table>
담당부서 사회복귀지원부
담당자 김영삼 부장
연락처 052-704-7561</td></tr>
</table>

(5) 근로복지공단 운영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범위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법과 제도적 운영 틀이 미흡한바, 산재병원의 재활·특화 기능 강화와 지역 공공성 제고를 포함하여 공단 운영체계 전반을 시대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선진화할 것	○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공단 개별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전략기획부 담당자 박진규 부장 연락처 052-704-7741

(6) 산재보험 부정수급 점검 체계의 합리적 재정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 정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한 과도한 조사로 산재 노동자 관련 정책 전반에 위축 효과가 발생한바,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감소·소송 증가 등 부작용과 후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업무상 재해·질병 판정을 정상화하고 과거 법원 판례와 규정에 따른 판단을 강화하는 등 재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	○ 부정수급 점검체계를 적발보다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 전 단계별 검증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의심자 정밀선별 후핀셋형 조사 추진 산재 신청: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자료를 통해 근로자 여부, 재해 장소, 병원 이동시간 등 검증 강화로 업무상 재해 조작 여부 확인 급여 지급: 국세청 소득 및 고용정보원 근로내역을 통해 보험급여 적정성 확인 장해 판정: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정보를 통해 산재장해의 과장 여부 확인 ○ 산재보험법에 규범적 판단을 명문화('26.下)하고, - 판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원의 규범적 판단 사례 수집*('26.2월) 및 규범 판단 기준 마련('26.下) *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 분석 및 업무처리 기준 정비' 연구용역('25.9~'26.2) - 이를 통해 법원 판례 및 사회통념을 고려한 산재결정 추진 ○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산업변화를 반영한 인정기준의 현행화 추진('26.4월) ○ 또한, 상소제기 기준 마련('26.1월)해 재해자 권리 보호 대책을 마련함 담당부서 직업병관리부, 부정수급예방기획부 담당자 박병윤 부장, 손상곤 부장 연락처 052-704-7441, 7451

(7)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인력 충원이 결정된 만큼 연도별 단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보고할 것	○ 업무상질병 업무 개선 추진단(단장 이사장)을 통한 전사적 대응으로 처리기간 단축 연도별 목표* 달성 * 목표: '26년 160일 -> '27년 120일 - 질병 전담조직 신설·확대 운영('26. 上)과 재해조사 전문자격 이수 확대 등을 통한 재해조사 기능 강화 - 축적된 DB를 활용하여 중복적인 조사 절차(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등) 지속 개선 - 발생빈도가 높은(다빈도) 직종 등에 대한 재해조사 표준화 확대('26. 上) - 청력검사 전문의료기관 신설 및 소음노출력 자체조사 강화, 직업성 암 조사방식 체계화 등 추진 - AI 기반 질병 재해조사서 자동화 도입('26년 12월) 등을 추진하여 기간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업무상질병부, 직업병관리부 담당자 이석 부장, 박병윤 부장 연락처 052-704-7431, 7441

(8) 산재 판정 및 소송 관련 업무 관행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 소송에서 패소율이 과도하게 높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 중심 판단 관행을 개선하고, 판례·법리에 따른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을 정착시키는 한편, 기계적 상고를 배제하는 명확한 상고 방침을 마련할 것	○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규범적 관점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반복 패소하는 건에 대한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26.1월) 담당부서 법무지원부 담당자 이종주 부장 연락처 052-704-7791
○ 산재 소송 패소율 증가는 업무상 질병 판정에서 보수적·의학적 관점에 기인하는바, 향후 산재 판정 시 법적·규범적 관점과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산재 판단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	○ 판례 분석*,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반복 패소사례 질병의 인정기준 개선('26.上) * '업무상 질병 행정소송 판례 분석 및 업무처리 기준 정비' 연구용역(~'26.上) - 판례 경향에 맞게 인정기준을 지속 현행화·구체화 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의학자문위원회(가칭) 신설·운영 ('26.4월) ○ 또한, 법원 판결을 존중한 상소제기 기준 마련('26.1월)으로 재해자 보호를 강화하겠음 담당부서 직업병관리부 담당자 박병윤 부장 연락처 052-704-7441

(9)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률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가입대상 확대 법안 통과에 따른 업무별 대응전략 수립·시행 - 3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동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가입확대 대비 및 운영의 내실화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종합 홍보계획 수립·시행 -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외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계정 확대에 따른 대국민 홍보 주력 담당부서 퇴직연금계획부 담당자 김완석 부장 연락처 052-704-7361

(10) 산재 특별진찰 효율화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데이터가 충분한 질병의 경우 특별진찰 없이 자체 처리하고, 필요 시 외부 인증병원을 확대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할 것	○ 축적된 산재 DB 활용한 다빈도 직종 확대 및 업무표준화를 통해 자체처리 증가 검토 중이며, -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외부인증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에 집중하고, - 소음성난청의 경우 청력검사의료기관 확대 등 검사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업무상질병부, 직업병관리부 담당자 이석 부장, 박병윤 부장 연락처 052-704-7431, 7441

(11) 울산 산재병원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울산 산재병원이 지역 최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	○ 개원 일정('26.9월)에 맞춰 시설·장비 구축 및 진료 운영 준비 단계적으로 추진 중 ○ 소아청소년과 포함 필수의료 진료과 개설을 위한 의료진 확보 노력 지속 추진 중 담당부서 울산병원개원준비단 운영계획팀 담당자 윤지원 부장 연락처 052-704-7468

(12) 공단 직원 안전 확보 및 민원 대응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민원인의 폭력·위협 상황에 대응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시설 방호원 배치, 민원 응대 공간 분리, 보호장비 보급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 보호 대책 강화 - (전담팀 운영) 공공기관 최초 특이민원 전담팀 지속 운영 - (지원 프로그램) 법률지원, 심리상담(EAP) 및 직원보호휴가 부여 등 - (시설방호원) 미배치 소속기관 인력 및 예산 반영 추진 - (직원보호시설·장비) 연차별 소속기관 직원보호시설 확충 및 휴대용 영상녹화기기 배포 ※ '26년 예산 605백만원 확보 담당부서 고객지원부 담당자 윤상희 부장 연락처 052-704-7591

(13) 산재병원 의료장비 · 인력 확보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병원은 CT·MRI 등 의료장비가 절반 이상 노후화되고 의사 퇴사율이 높아 양질의 진료가 어려운 바, 기재부·노동부와 협의하여 장비를 교체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진료역량을 강화할 것	○ (의료장비) '26년도 110억원 출연예산을 확보하여 MRI·CT 등 의료장비 교체(34점)를 통해 노후화율 5.8%p 개선 예정 ('25년 46.6%→ '26년 41.2%) -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을 증액* 하고, 주기적인 장비점검을 통해 노후 장비 관리에 집중 * 노후화율 개선을 위해 매년 약 16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 ○ (의사수급) 채용경로 다각화, 의사 근무여건 개선 등 노력으로 '26.3월 의사 충원율은 '25.8월 대비 0.8%p* 개선 * '25.8월 86.6% → '26.3월 87.4% - 향후 정부 의사 수급 지원 정책 등 적극 참여하여 인력 수급 안정화 및 진료역량 강화에 노력 담당부서 진료지원부장 담당자 이은진 부장 연락처 052-704-7522

(14) 판결로 지급 결정되는 청구권에 대한 안내 체제 마련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공단에서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환자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급여의 차액은 대상자가 간단한 신청만 하여도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법인 등 대리인들이 합계 수백억에 달하는 과다한 수수료를 수취하였던 문제가 있음.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 등을 개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체제의 구축을 검토할 것	○ (후속조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액 지급 청구 시 대리인 수임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함 안내 **근로자**: 미신청자에 대해 직접 신청 가능함을 안내(상시 상담 포함) **소속 기관**: 민원 상담 시 대리인 수임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지시 **유관 기관**: 요양 중 의료기관, 진폐단체 등을 통해 공단(소속기관)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토록 협조 요청 - (제도개선)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운영으로 산재보험 청구과정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수수료 문제 해소 기반 마련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25.9월) ○ 대법원 파기환송(지급보류 안내) - 최종 판결 확정(업무지침 신속 마련) - 홍보 및 지원(지급 안내 및 한시적 지원센터 운영)으로 이어지는 신속 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음 담당부서 업무상질병부 담당자 이석 부장 연락처 052-704-7431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자격시험 관리 부실 반복 및 노조 관련 부당노동 행위 등에 따른 기관장 책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이사장 재임 기간 중 국가자격시험에서 검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기관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을 받는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바, 현 이사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 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하였고, 이사장은 사임('26. 1.) - 이후 직무대행 체제 下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경영혁신을 위해 “HRDK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시험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전략기획부 담당자 2급 남효준 연락처 052-714-8031

(2) 공공기관장 도덕성 · 책임성 확보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임원의 정치적 편향 발언 및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옴부즈만 포럼을 신설·확대하며 다액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경영평가 D등급, 직원·노조 반발 등과 맞물려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훼손한바, 기관장 거취를 포함해 도덕성·책임성·예산 집행의 적정성 전반을 재점검할 것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안사항 중심으로 타 행사와 연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예산 집행되도록 조치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전반을 재점검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음('25. 11.) 담당부서 전략기획부 담당자 2급 남효준 연락처 052-714-8031

(3) 해외취업지원사업 사후관리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착지원금 지급 이후 현지 체류 실태·안전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하고, 해외취업권익보호센터를 통한 형식적 모니터링은 존재하나 실질적인 소재 파악·위험 대응 체계는 미흡하므로, 해외취업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 및 실효성 있는 해외취업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용노동부 연계를 통해 '해외취업 지원사업 취업자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25.12월) - 공단 자체적으로 해외취업지원사업 글로벌 리스크 대응단 구성('26.4.1)하여 해외취업 청년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 마련 ○ 이를 기반으로 현지 협력체계 등 해외취업자 지원체계 강화 및 정보 제공·예방활동 강화 추진 - 현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KOTRA 지속 협의 및 재외공관 협의회('26.5월 예정) 개최 추진 - 고용노동부 등 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해외취업안전 대응 매뉴얼 수립 추진('26. 상반기 중) 담당부서 해외취업기획부 담당자 2급 이진영 연락처 052-714-8601

(4)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 소통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경영평가 하락과 각종 현안으로 기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대응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선제적 소통을 통해 조직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단이 처한 현실과 개선 노력을 정치권과 공유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	○ 공단 노사는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경영성과 창출과 임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동이사 선임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정례회의를 진행 중 ○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준비와 더불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합동 연구과제”를 진행할 계획임('26.4)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담당자 2급 김지연 연락처 052-714-8071

(5) 국가자격 시험 검정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근 발생한 국가자격 시험 검정 사고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위탁시험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전문자격 시험 표준화 등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검정사고 재발을 방지할 것	○ 국가전문자격시험 개선을 위한 “노동 - 공단-소관부처”참여 정례협의체 구성 (’26.3월), 운영 중 - 응시 수수료 현실화 협의, 전문자격 관련 법령 제·개정, 위탁 계약서 갱신 및 내용 개선, 검정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시험 운영의 표준화 방안 등 개선 추진 담당부서 능력평가기획부 담당자 2급 조상현 연락처 052-714-8651

(6) 국가자격검정 제도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가자격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별로 구체적인 채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문제별 채점기준을 마련 및 구체화하고, 채점기준을 비공개하는 실기형(작업형) 시험은 자격특성을 고려하여 채점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점기준을 공개하며, 국가자격시험의 수험결과물을 기록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것	○ 전문자격 면접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 마련('26.3월) - 문제별· 평정요소별 채점기준, 모범답안, 출제 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 검토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최신법령, 난이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 ○ 기술자격 실기시험(작업형)채점기준 공개 관련 「작업형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타당성 검토 추진계획」 수립 ('25.12월), 연구착수('26.3월) 담당부서 능력평가기획부 담당자 2급 조상현 연락처 052-714-865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위험성평가 장려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전면 확대 검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감면하는 산재예방요율 제도의 참여 사업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 반영이 부족한바, 제도의 산재 예방 효과성을 확인하고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확대 방안 검토 - 적용 업종 확대, 산재예방 감면 요율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 검토 ○ '26년 연구용역* 추진 ('26.4~) *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확대 및 개선 방안 연구 담당부서 산업안전실 담당자 고인수 부장 연락처 052-703-0620

(2)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위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사후 점검과 서류 위주의 관리에 기인하는바, 상시 점검 인력 확충과 작업허가 전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 기술지원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작업 안전조치이행 확인 강화 유도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C-C-49-2026)에 안전조치 이행 조항 개정 5.2.(2).(나) 위험작업(예; 설비 내부 위험물질 누출이 가능한 플랜지 개방 또는 배관 절단 등)시 작업준비 상태 및 안전조치 이행 확인은 사업장 특성에 고려한 적합한 방법(「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포함)으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공정안전관리(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에 동영상 촬영 등 작업허가 모니터링 방법 기술지도 실시('26~) 담당부서 전문기술실 담당자 이태형 부장 연락처 052-703-0601

(3)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체계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재해 트라우마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편차가 크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산재 외 상담을 병행함에 따라 과로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이주노동자 상담 수요 급증에도 다언어·통역 지원이 미흡한바, 내국인·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상담인력 충원, 운영 효율화 및 다언어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26년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신설*(2개소)하여 트라우마 상담 인력(4명)을 충원하겠으며, *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기관 공모중(3.19.~4.28.) - 향후에도 상담 인력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음 ○ 또한, 이주노동자 산재 트라우마 상담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 외국인노동자 산재 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체계 구축 방안(`26.3~`26.10월) - 연구용역 결과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다언어 상담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음 담당부서 산업보건실 담당자 문현곤 부장 연락처 052-703-0670

(4)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가격 부풀리기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반복 적발된 만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부서 확충 등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	○ **(전담조직 신설)** 부정수급예방을 위한 '부정수급예방단' 신설 - 부정수급예방단은 지원품목 가격검증 및 모니터링 실시, 자진신고제도 운영, 부정수급방지 홍보활동 등 수행 - AIoT 관제시스템*을 통해 고액 지원설비 임의매각, 위치이동, 안전장치 해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부정수급 원천차단 * 지원설비에 AIoT 단말기 설치를 통해 설비의 위치정보, 임의매각, 안전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 ○ 부정수급 예방 체계 강화 - 집행 전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활동·조사·조치 및 지원품목 사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추진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실 담당자 강정훈 부장 연락처 052-703-0771

(5) 이동식 에어컨 보급사업 부정수급 대응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폭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동식 에어컨 보급 지원사업에서 다수의 에어컨 제조사가 에어컨 냉방 능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참여제한 외에도 환수·손해배상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사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	○ '25년도 사업에 참여한 이동식 에어컨 제조사 14개소에 대해 부정수급(7.3억원)이 확인됨 - 참여제한 통보·이의제기 접수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4년도에 대한 냉방능력 과대표기 및 부정수급 여부를 추가조사('26년 상반기 내) 후 최종 처분 조치하겠음 - 아울러 보조금 환수(필요시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실시하겠음 담당부서 산업보건실 담당자 문현곤 부장 연락처 052-703-0670

(6) 이러닝 콘텐츠 무상 보급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발한 이러닝 안전교육 콘텐츠를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유상 보급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하고, 영세 사업장 등 예산 부족 사업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무상 보급 계획을 수립할 것	○ 안전보건공단 “이러닝콘텐츠 보급지침” 개정을 통해 무상보급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 * (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 개발한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는 이러닝전산시스템에서만 구현가능한 형태로, - 시스템이 부재한 국민 및 영세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한 영상형식으로 변환하여 무상제공 예정임 담당부서 교육총괄실 담당자 문석인 부장 연락처 052-703-0738

(7) 건설·조선업 안전보건교육 체계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재가 다발하는 건설업과 조선업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재개발하고, 온라인·집체 중심 교육을 체험·실습 중심으로 전환하며, 교육 인프라 투자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	○ 산재 다발업종 맞춤 안전교육 체계 구축 추진방안을 의원실 보고('25.10.) - 전문건설업체 대상 계층별(사업주, 실무자) 교육과정 개설, 운영 ○ 조선사와 협업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보건교육 등 추진 예정 담당부서 교육총괄실 담당자 문석인 부장 연락처 052-703-0738

(8) 산업안전보건 체험교육장 운영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전국 8개소 안전체험 교육장 중 4개소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노후화 및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이며, 충남·경남 등 일부 지역은 교육장이 없는 상황이므로, 신규 교육장 설치 계획을 포함한 운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	○ 노후화로 운영 중단된 공단 안전체험 교육장 4개소('25년 10월 기준) 중 - 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은 시설개선을 마무리하여 '25년 12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 나머지 3개소(경북, 경남, 충청) 중 경북과 경남은 '26년 예산에 반영되어 '30년 개관을 목표로 시설개선 추진 중이며, - 충청은 '27년 예산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 ○ 전국 안전체험교육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남 영암에 '30년 개관을 목표로 안전체험교육장 신규 건립 추진 중 담당부서 교육총괄실 담당자 김태일 부장 연락처 052-703-074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직업훈련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훈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도 취업실적 등 정량지표 위주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체계도 보완할 것	○ 훈련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여 훈련생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연계 강화 - '커리어플러스*'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훈련과정을 내실화하고, '2단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율'을 성과 지표로 신설·강화하여 평가체계 보완 * (커리어플러스) 근로의욕 증진,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 위한 구직역량 프로그램으로써 표준교안 신설, 발달장애 강의개발 등 전문성·효율성 강화 담당부서 취업지원부 담당자 일반직 4급 김규일 연락처 031-728-7116

(2)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적합 일자리 제공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월평균 약 40만 원을 받는 1만 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실행할 것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가 일반노동시장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지원 사업('20년~)을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출퇴근 비용 지원('21년~)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 중 - '26년부터는 직업재활시설 전환성공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전환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부 담당자 직업평가직 3급 장영남 연락처 031-728-7053

(3) 금융·보험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보험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계 및 협회와 협력하여 인식 개선과 채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진할 것	○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26.3.6.) - 고용노동부, 공단,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 개최 ○ 기업별 고용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채용 지원 담당부서 고용컨설팅부 담당자 일반직 3급 문영경 연락처 031-728-7055

한국고용정보원

(1) 고용보험기금 편취 사건 관련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정보원 직원이 고용보험시스템을 조작해 수억 원의 기금을 편취하고도 일부 금액이 미환수되는 문제가 드러난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 전면 재정비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 ○ 고용보험시스템 허위지급 사건과 기관 전반의 청렴도·윤리 문제를 고려하여,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1. 기술적·제도적 통제 시스템 강화 ○ (DB 승인 및 모니터링) 기금 및 일반회계 자료의 입력·수정·삭제 시 팀장 결재 의무화('24.9.)하고, DB 접속시 관리자에게 실시간 문자 통보('25.4.) ○ (펌뱅킹 관리 프로그램 개선) - 펌뱅킹 데이터 변경 이력 기록 되도록 개선('24.8.) - 펌뱅킹 소켓 프로세스 중단시 팀장 및 관련자에 실시간 알림('24.8.) - 펌뱅킹 소켓 프로그램 전문 생성/전송시 중복체크 기능 추가('24.9.) ○ (권한관리 및 점검) '고용정보시스템 관리자 권한 관리 지침'을 제정('25.7.)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외부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점검 실시('25.8~9.) 담당부서 시스템운영팀/고용24행정포털팀 담당자 팀장 최영봉 /팀장 강종현 연락처 044-870-8421/8582 2. 조직적·윤리적 통제 및 제도 강화 ○ (내부통제 체제 강화) 기관장이 주재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점검 실시 ○ (맞춤형 교육 및 훈련)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별 청렴교육 실시('25.7.) 및 직위별 청렴교육을 운영('25.5~12.)하는 등 반부패 모의훈련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25.8.)하여 훈련 실효성 제고 ○ (무관용 징계 원칙 확립) 국가 재정 사기·편취 등 중대범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담당부서 혁신성과팀/감사실/인재개발팀 담당자 팀장 김용현/과장 김윤수/팀장 조동진 연락처 043-870-8761/8051/8720

(2) 해외 취업 사기성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해외 고수익 미끼 구인광고로 청년 납치, 감금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은 고용24 연계 구인공고에 한정되어 잇음. 또한 사전 차단 광고의 사후 관리 여부도 불명확한바, 고용24에서 관리하는 광고에 대한 차단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연계한 사후 조치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할 것	○ (AI점검시스템) 고용24에 연계되지 않은 구인공고에 대해서는 거짓구인광고 의심내용을 AI가 판별하고 의심 내용이 확인되면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담당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AI 점검시스템 구축·운영('26.12. 시범 개시) 담당부서 AI전략팀 담당자 팀장 조인성 연락처 043-870-8450 ○ (사후조치체계 마련) 고용24에 연계되는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 의심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연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여 구인공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피드백API) 개발 등 사후조치 체계 마련('25.12.) 담당부서 취업지원서비스1팀 담당자 팀장 지한수 연락처 043-870-845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 캄보디아 분교 추진 과정의 감사 및 사실관계 명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사장이 이사회·주무부처 협의 없이 캄보디아 분교를 기획하고 MOU 체결·홍보 후 임의 중단한바, 기존 ODA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의사결정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 ○ 해외 분교 설치는 외국인력 양성을 위해 국회의원이 먼저 제안하고 정부와 소통하며 추진된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의지 없는 사업'으로 평가한 것은 부적절한바, 사업 제안 경위와 추진 과정, 국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등을 검토할 것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임 담당부서 대외협력부 담당자 일반직3급 고아라 연락처 032-650-6665 담당부서 대외협력부 담당자 일반직3급 고아라 연락처 032-650-6665

(2) 폴리텍대학 지역균형 캠퍼스 확충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높은 취업률로 직업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이 경북 북부 등 캠퍼스 공백 지역의 산업 여건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캠퍼스 설립을 포함한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국민의 수요 증가 및 지역 산업 발전에 따라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퍼스(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TF 등 다각도 방안을 검토 중임 담당부서 기획부 담당자 일반직5급 민상준 연락처 032-650-6627

(3)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감사 결과 환수·징계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장의 위법 행위 관련, 부당 집행된 국고 예산을 환수하고, 징계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	○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 당시, 산학협력단장의 행정관리수당 지급은 산학협력단 내규가 불분명하여 발생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기실시한 주말 행정에 대한 수당은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안이나,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임 담당부서 감사부 담당자 부교수 이성우 연락처 032-650-6773 담당부서 인사부 담당자 일반직4급 하민정 연락처 032-650-6732

(4) 연구용역 운영의 공정성 제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직업교육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연구용역 발주 권한을 독점하여 이사장이 지인 및 관련 인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반복 발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것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통해 해당 내용의 감사가 완료되었음 -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관리운영규칙 개선 및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 연구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담당부서 연구개발처 담당자 일반직3급 이현범 연락처 02-749-5021

건설근로자공제회

(1) 퇴직공제금 · 부가금의 수준 현실화 및 정례 인상제도 도입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반 건설업이나 전 산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2020년 이후 6년간 동결되어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바, 연내 부가금 포함 공제부금 일액을 8,500원 이상으로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처럼 매년 자동 인상되는 정례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삭감된 숙련인력 훈련·취업지원 예산도 조속히 복구할 것	**《시정 완료》** ○ 건설 관련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26. 4. 1.부터 공제부금 일액 8,700원* 적용 중(기존 6,500원) * 퇴직공제금 8,200원, 부가금 500원 ○ 2026. 2분기부터 건설 관련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들로 TF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논의 예정 ※ 공제부금 정례 조정제도 도입 등 ○ 2026년 정부 예산 12.8억원을 확보하여 숙련인력 양성 예산으로 집행 중 담당부서 전략기획부 담당자 2급(부장) 조원구 3급(차장) 이재탁 연락처 02-519-2011 02-519-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 구체적 자료 제공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초기·성장기·성숙기 기업 지원 실적과 관련해 최근까지의 구체적 데이터를 종합하여 보고할 것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남 * 총 매출액 7조 6,986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48,286명('24년 기준) ○ 또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센터 운영(전국 19개소), 판로지원 및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25년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초기·성장기·성숙기 성장단계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디딤돌 지원: 교육 358회, 컨설팅 1,552회 * 성장기 지원: 제조, 문화예술, 교육 등 사회적기업 86개소 지원 * 성숙기 지원: 사회적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6건 지원 ○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담당자 4급 박복음 연락처 031-697-7811

한 국 잡 월 드

(1) 잡월드 부당해고 처리 개선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잡월드 직원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 전 다시 해임된 바, 징계·해고 절차를 바로잡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이후 잡월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 ○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담당자 팀장 전경진 연락처 031-696-831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 노동교육원 기능 강화 및 노조법 교육 준비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개정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해 관련 커리큘럼 및 교재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준비할 것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방안」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 연구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노사발전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담당부서 기획조정팀 담당자 대리 황의기 연락처 031-760-77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위원회의 체제 및 역할 재편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새 정부에서 사회 근본적인 의제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위원장 교체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체제 및 역할을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5.11.4.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 취임 이후 한국노총, 경총을 비롯한 노사 단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회적 대화 정상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제 설정 및 위원 위촉 등 협의 - 또한, 지역·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 * 한국노총('25.11.7), 한국경총('25.11.11) 등 취임 인사 방문 및 노사정 공동워크숍('26.1.16) 등 15회의 실무협의 추진 ** ▲(지역·현장 간담회) 14회 ▲(전문가 간담회) 17회 ○ 대통령 주재 3.19. 새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식 및 토론회(3.19)에서 「사회적 대화 2.0*」의 방향을 대통령께 보고 *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공감형 의제 설정,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의 도입 등 단순히 중단된 대화의 재개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비전을 제시 - 아울러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에서는 노사정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회복을 약속, 후속 조치로서 노사정 대표자의 정례 만남인 「노사정담」을 시작(3.26. ~ , 월1회) *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추진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여 「사회적 대화 2.0」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5급 최영욱 연락처 044-202-7111

(2) 사회적 대화 중립성 확보 및 노사 협의 강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관련하여 법정 정년 연장보다 사용자 중심의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는 등 균형성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노사 협의와 대화를 강화할 것	○ '24.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 불참 등으로 전체회의 개최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익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그간 축적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태로 우선 발표하였음 ○ 향후 우리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서는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균형있게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전문위원실 담당자 전문위원 김태환 연락처 02-721-7149

(3)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해 국회의 약속을 받거나 대통령이 노동계와 직접 대화를 통해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26.3.19. 대통령 주재 경사노위 출범식 및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사정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 - 대통령께서도 우리 사회의 악순환 해소를 위해 노사정의 대화와 신뢰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 지속적인 대화 당부* * 대통령, "노동자-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쌓여온 불신과 격차는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사정 정례 대표자 만남인 「노사정담」*을 추진 * 열린 대화, 정례화, 공동 주인의식을 원칙으로 노사정과 경사노위 순차 개최하는 대표자 만남(3.26 첫 모임 개최, 월 1회) - 향후에도 사회적 대화 논의 과정 및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사정 등 참여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계획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5급 최영욱 연락처 044-202-7111

(4) 일본식 계속고용을 한국식으로 수용할 방안 연구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법정 정년 연장을 곧바로 하는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되고 청년층의 어려움도 심화될 것이며, 일본식 계속고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연령 차별 금지 원칙으로 인해 임금 조정이 어려운 등 난점이 발생하는바, 일본과 싱가포르의 상황 등을 검토하여 일본식 계속고용을 한국식으로 수용할 방안을 연구하여 보고할 것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제5차 회의('24.9.12.)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제도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 - 해당 논의 결과는 이후 공익위원 제언에 반영된 바 있음 - 다만, 해외 제도의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제도적·법적 여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담당부서 전문위원실 담당자 전문위원 김태환 연락처 02-721-7149

(5) 산업안전 관련 사회적 대화 확대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산업안전 관련 중요한 정책들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산업안전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핵심 의제임을 고려하여 향후 산업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노사정 참여 기반의 논의 구조를 강화할 계획 - 특히 '26년 새롭게「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 노동자 의견뿐만 아니라 사용자 의견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산업안전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겠음 담당부서 전문위원실 담당자 전문위원 장욱희 연락처 02-721-7143

(6) 노조법 제2·3조 개정법률 관련 역할 수행 노력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 과정에 역할 수행이 미비 하였으므로, 향후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경사노위는 '26. 3. 19. 출범 및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 발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협의,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 ○ 해당 의제 관련 참여 주체의 논의에 성실하게 지원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5급 김춘희 연락처 02-721-7112

(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사회적 대화 필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	○ 경사노위는 '26. 3. 19. 출범 및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협의,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등을 논의 할 계획 ○ 해당 의제 관련 참여 주체의 논의에 성실하게 지원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기획과 담당자 5급 김춘희 연락처 02-721-7112